

글로벌 변화에 대응한 자본시장 공시제도 연구

이준호



연구보고 2013-02

글로벌 변화에 대응한 자본시장 공시제도 연구

이 준 호

글로벌 변화에 대응한 자본시장 공시제도 연구

The Legal Study on the Disclosure
System in Financial Market

연구자 : 이준호(부연구위원)
Lee, Joon-Ho

2013.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변화에 의하여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증가하여,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시유형 및 공시규제형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표적인 글로벌 변화로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과 신국제감사기준(New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diting, 이하 New ISA)의 도입은 많은 변화와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법제도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연결재무제표중심, 원칙중심(Principle-based) 특성의 국제회계기준 및 위험중심 감사방식(Risk-based approach)의 신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하는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업회계 공시제도의 제도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회계기준의 연결재무제표중심·원칙중심의 특성에 맞춰 지배회사·종속회사에 대한 조치를 구분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선택권·전문가적 판단이 관여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필요함.

-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는 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위주보다는 시장기능을 통한 규율방식과 적정한 재무정보의 신속한 공시 유도 그리고 시장접근적 회계감독이 가능하게 하는 공시제도가 필요함.
- 신국제감사기준의 위험중심 감사절차 특성에 맞춰 왜곡표시 금액 위주의 감리조치에서 위험평가 등 감사절차의 합리성 여부 위주의 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시제도가 필요함.

II. 주요 내용

- 현행 공시제도 현황 및 관련 법제
 -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하위규정 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국제감사기준
- 외국 기업공시제도 현황: 미국, 일본, 영국
 - 외국의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통시장 공시제도 현황
 - 외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현황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
 - 연결재무제표 관련 공시

-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수시공시 개선
- 심사대상 재무제표 범위 조정
- 공정가치평가에 관련 공시
 - 모범사례를 통한 유형 정형화
 - 주식공시 세부절차 마련
- 자발적 사전공시제도
 - 재무심사 오류의 고의성 검토
 - 시장공시전 감사인의 수정재무제표 활용 및 검토
-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 감사보고서 관련 규정
 - 신국제감사기준에 적합한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의 명문화
 -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
 - 신국제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판단의 중요성 강조
 -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의 교체기간 연장 또는 제도 폐지
 - 감사계약의 해지와 감사인의 선임 관련 규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의 감사계약 해지 검토
 - 감사인 선임 및 교체의 법적 장애 제거
 -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완화

- 감사인 책임의 비례책임 도입
-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감리제도 개선
 - 감사보고서 감리기능의 보완
 - 단계적 감리제도의 보완
 - 심사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
 -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리
 -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감리절차 마련
 - 감리업무 위탁의 경우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품질관리감리의 기능 제고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검토
 - 품질관리감리 결과의 정보 공개
 - 양정기준 개선
 - 처벌위주에서 제도순응 유도로의 전환
 - 종속회사 감리위반조치의 합리성 조정

Ⅲ. 기대 효과

- 현행 자본시장에서의 공시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 제시

- 국제회계기준 및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대응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는 공시제도 마련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있어서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콘텐츠 제공

▶ 주제어 : 기업공시, 국제회계기준, 국제감사기준, 감리제도, 원칙주의 회계원칙, 위험중심 감사절차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With the recent global change, the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 financial markets have increased and as such, a need is facilitated to replace the existing disclosure system with a new disclosure form and regulations.
- Representing the global change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FRS”) and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di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ISA”); which is expected to administer change. To respond to these, there is an urgency to develop policy and legislative instruments.
- When implementing the IFRS, which caters arou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s principle based, and the new ISA, whose approach is risk-based, there is a necessity to amend the existing company auditing disclosure regulations that will accommodate these standards.
- Separate measures should be undertaken for controlling companies and subsidiary companies to meet the specifications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s and principle based approach of the IFRS. And for the company's auditing process, there is a need for disclosure rules that accounts for decision making by the appointed person(s) and/or experts.

- As the principle based auditing approach stipulated by the IFRS may be infringed up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debate on this issue. As such, rather than a strict penalty based approach, a disclosure regulation is necessitated that is based on the market's regulatory system, inducement of notice with reasonable auditing information and market-based auditing inspector.

- For the new ISA, which is founded upon auditing methods that are risk-based, the falsification of the marked distortion amount should be based upon the auditing method of risk assessment and for the falsification of auditing methods should be undertaken within the audit review.

II. Main Summary

- Current disclosure policy and related legislation
 - Commercial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Korea Exchange Regulations, etc.

- Disclosure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United Kingdom
 - Foreign issue markets disclosure legislation and secondary markets disclosure legislation

- Amendment of disclosure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IFRS
 - Notices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Amendment of notice for controlling and subsidiary companies
 - Scop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subject to evaluation
 - Notices for Fair Value Accounting
 - Category standardization through best practices
 - Formulation of a specified procedure for foot note disclosure level
 - Voluntary Pre-Disclosure Scheme
 - Intentional auditing evaluation errors
 - Use and analysis of an auditor's pre-market notification financial statements

- Amendment to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SA
 - Regulations for Audit Reports
 - Suitable stipulations and contents for audit reports that meet the criteria of the ISA
 - Regulations for the alteration of Directors and Audit Assistants

-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n expert's decision as required in the ISA
- Whether there should be an extension of term or whether the policy should be repealed for the alteration regulations for Directors and audit assistants
- The related regulations for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the subsequent repeal of the Audit Engagement
 - The analysis of the repeal by the auditors' appointment committee of the audit engagement
 - Statutory obstacles to the appointment and alteration of auditors
- Auditor's Obligations
 - Alleviation of obligation to the third party by the auditor
 - Proportional liability to the auditor's obligations
- Amendment to the Audit Review legislation due to global change
- Complementary measures for audit reviews within audit reports
 - Complementary measures that stipulate a phased auditing policy
 - Separation of the review and inspection mechanism
- Inspec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udits
 - Creation of a inspection measure for unincorporated subsidiary companies
 - In circumstances where inspection services are delegated, the need to clarify who has the obligation

- Improving the function of the quality control system
 - Review of incorporated companies's auditors registration policy
 -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results of the quality control system
- Refinement of sentencing guidelines
 - Change from a penalty system to an inducement of regulatory adjustment
 - Revision of subsidiary companies infringement of inspection measures

III. Expected Outcomes

- An overall analysis of the related regulations for the current financial markets' disclosure policies and provide for regulatory suggestions
- Disclosure policy that meets the global standard to accommodate the IFRS and ISA
- The provision of policy contents to promote transparency and integrity within Korea's financial market

▶ **Key Words** : Corporate disclosure, IFRS, ISA, Auditing policy, Principle-based auditing principle, Risk-based auditing procedures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	22
제 2 장 자본시장 공시제도 개관과 글로벌 변화	25
제 1 절 우리나라 자본시장 공시제도 법제와 변화	25
I. 우리나라 자본시장 공시제도 법제	25
II.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내용	47
III.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의 도입	56
IV.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 제도 개선	64
제 2 절 외국의 자본시장 공시제도	68
I. 미 국	68
II. 일 본	82
III. 영 국	97
제 3 장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109
제 1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	109
I. 개 요	109
II. 연결채무제표 관련 공시	115

Ⅲ. 공정가치평가에 관련 공시	123
Ⅳ. 자발적 사전공시제도	128
제 2 절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132
Ⅰ. 개 요	132
Ⅱ. 회계감사기준 제정 관련 규정	138
Ⅲ. 감사보고서 관련 규정	140
Ⅳ.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	143
Ⅴ. 감사계약의 해지와 감사인의 선임 관련 규정	148
Ⅵ. 감사인의 책임	154
제 3 절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감리제도 개선	161
Ⅰ. 개 요	161
Ⅱ. 감사보고서 감리기능의 보완	164
Ⅲ.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리	169
Ⅳ. 품질관리감리의 기능 제고	174
Ⅴ. 양정기준 개선	178
제 4 장 결 론	183
참 고 문 헌	191

표 목 차

<표 2-1>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및 경과규정 제·개정 요약	52
<표 2-2> 33개 신국제회계감사기준서	59
<표 2-3>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신·구 비교	62
<표 2-4> 주요국의 재무제표 심사제도 비교	65
<표 2-5> 일본의 기업정보개시제도 체계	85
<표 2-6> 허위기재의 배상범위	95
<표 2-7> 개시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95
<표 2-8> 영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슈	102
<표 3-1> 전문가적 판단 영역	112
<표 3-2> 전문가적 판단 요소	114
<표 3-3>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사항 및 기준 개정내용	118
<표 3-4> 개정 회계감사기준 내용	134
<표 3-5> 단계적감리 도입 특징	166
<표 3-6> 연결재무제표 감리방식 비교	171
<표 3-7> 연결실체감리 개요	172
<표 3-8>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항목(안)	17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및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매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변화의 폭이 큰 정책이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공시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규제 범위와 대상 및 정도에 따라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국제적인 동향과 제도변화에 국내적인 대응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문이어서, 법제도 개선 및 대응은 항상 적시성과 효율성 및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글로벌 변화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크게 증가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시유형 및 공시규제형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대응의 변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글로벌 변화로서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법제도 정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경우는 이미 도입되어 제도정착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은 국제회계기준의 제도정착 과정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회계 관련 공시의 경우, 사후적 처벌 중심의 현행 감리체제에서 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회계공시심사위주의 감독방식으로 전환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처리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시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도개선 요청임과 동시에 국제감사기준의 특수한 감사방식으로 그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연결중심, 원칙중심 특성의 국제회계기준 및 위험중심 감사방식의 신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하는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업회계공시제도의 제도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이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부문도 있지만, 아직 제도도입 이후 추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논의만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전적 회계공시심사위주 감독방식으로 전환시 적시성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심사시 발견된 오류사항에 대한 적시성있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연결중심 및 원칙중심의 특성에 맞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조치를 구분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선택권 및 전문가적 판단이 관여될 수 있는 공시제도도 필요하다.

즉,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는 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위주보다는 시장기능을 통한 규율방식과 적정한 재무정보의 신속한 공시 유도 그리고 시장접근적 회계감독이 가능하게 하는 공시제도가 필요하게 되며, 회계감사인인 감사 또한 이러한 방향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감리절차 및 조치방식에 따라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즉시 수정하도록 하여 당해 회사명을 공표할 경우 조치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

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방식도 처벌 위주 보다는 감독당국과 감사업무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시장기능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자율적인 공시규제 속에서 적정한 재무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여, 시장접근적 회계감독의 강화로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신국제감사기준의 위험중심 감사절차 특성에 맞춰 왜곡표시 금액 위주의 감리조치에서 위험평가 등 감사절차의 합리성 여부 위주의 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현재의 감리제도는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된 후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역으로 추적해서 조치나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인데 반하여, 신국제감사기준은 위험평가 기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결과위주의 감리가 유지되는 한, 소극적인 이행절차 위주의 감사, 부가가치가 없는 면피용 감사가 지속될 우려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부문의 자본시장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제도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제도운영을 위한 법제도 전반의 검토와 개선방안의 제시가 요청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공시제도에 대한 법제개선은 기본적으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외에 관련 법들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시행령, 규정, 지침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상기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공시규정 및 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즉, ①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및 ②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간의 체계성과 정합성 검토 그리고 ③ 관련 법률간의 보완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연구의 주요 범위로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의한 공시제도의 변화 및 대응에 관하여 법률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① 원칙중심 및 연결중심 회계기준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 ② 지배회사·종속회사 문제, ③ 회계처리의 전문가적 판단 등을 고려한 공시제도 마련, ③ 사전적·공시감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에 의한 공시제도의 변화 및 대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신국제감사기준의 기본방향인 목표지향 접근방법 즉, 개별 감사기준마다 목표를 별도 구분하는 접근법을 채택하는 감사방식과 위험평가에 기반한 접근방식 즉, 회사의 사업과 전략을 이해하고, 사업위험의 관점에서 감사위험을 파악하는 방식에 부합할 수 있는 공시제도와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공시제도 법제 현황에 대해서 법률, 규정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현재 공시제도의 상황을 검토하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현황 및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2013년부터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법령과 동떨어져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내용 또한 실무적인 기준으로 운용된다는 점으로 인하여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시제도 관련 현행 법령 및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회계기준의 내용과 조항 등을 선별하여 대조함으로써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하였다. 회계공시관련 법령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 및 감사기준 또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검토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자본시장의 중요한 제도동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 즉, 미국, 일본, 영국의 공시제도에 대하여 개관한다. 영국의 경우는 국제회계기준의 중요한 도입국가로서 현행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현황이 주는 시사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국제적인 이슈가 이전에 중심적인 회계기준이었던 “US-GAAP”을 운영하였던 국가로서 아직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오래된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검토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공시제도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아직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② 국제감사기준의 도입, ③ 회계감독 및 감리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 관련 공시, 공정가치평가 관련 공시 등을 중심으로 공시제도의 변화와 제도개선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도의 정착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도정착을 위하여 도입되거나 변화된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감사기준의 제정,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관련인 교체제도, 감사계약의 해지 및 감사인 선임 등

현행 외부회계감사제도에서 변화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분석한다. 국제감사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는 달리 현재 바로 도입되어져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서 이미 제도도입 준비사항이 진행되어온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하여 향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회계감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감리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즉, 변화된 감사보고서의 감리기능의 보완,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리, 제도개선 사항으로 품질관리기능의 제고와 현행 양정기준의 합리성 제고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공시제도의 법제적 검토는 적용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에 대한 효과로서 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등의 검토가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궁극적으로 투명한 공시정보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방향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제 2 장 자본시장 공시제도 개관과 글로벌 변화

제 1 절 우리나라 자본시장 공시제도 법제와 변화

I. 우리나라 자본시장 공시제도 법제

1. 개요

“기업공시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도로서 시작된 것은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2호로 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미국의 연방증권제법을 모델로 한 일본의 증권거래법¹⁾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미국 연방증권제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은 규정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증권규제에 관한 법률이 사용하고 있는 공시에 의한 규제방식과 일본의 증권거래법에서 활용되었던 입법방식이 채택되어 사용되었다.²⁾

우리나라에서 공시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상법」에서는 회사법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법」상의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외감법과

1) 일본의 증권거래법은 2007년(평성19년) 법개정으로 「증권거래법」의 법명칭이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변경되었다.

2) 미국의 공시에 의한 규제 방식은 영국 회사법을 모방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영국에서는 1862년의 회사법 제정이후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 예방의 길(foreswarned is forearmed)”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기업공시를 중요한 규제 원리로 삼고 있었다. (川口恭弘, 開示制度の意義, 「企業情報の開示制度について」, 同志社大学監査制度研究会と関西支部監査実務研究会との共同研究会 (2009), p.52)

자본시장법이 공시 및 회계감사에 제도운영과 규율을 담당하고 있다. 외감법은 공시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감대상 기업의 공시 등에 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을 전제로 전반적인 공시운영에 관한 규율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은 법률 이외에 시행령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공시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³⁾

상법과 외감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이외에 주목해야 할 하위법령으로서 기업의 외부감사와 회계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자본시장 내에서 기업상장과 공시의 실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하위규정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이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내에서 기업이 직접적이고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령은 한국거래소 하위규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하위규정은 크게 내부규정과 업무규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규정은 ① 공통규정, ② 유가증권시장규정, ③ 코스닥시장규정, ④ 코넥스시장규정, ⑤ 파생상품시장규정, ⑥ 장외파생시장업무규정, ⑦ 시장감시규정, ⑧ 회원관리규정으로 세분화된다.

3) 이러한 공시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은 각각 고유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입법목적에 의하여 법률의 적용과 집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기업공시제도에 대하여는 고유한 입법 목적을 우선하여 판단하거나 적용한다기 보다는 기업공시제도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과 기능 및 역할이 우선하여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업공시제도의 기능으로서 ① 투자가치판단 자료의 제공과 공정성 확보 기능, ② 권리의 실질화와 지위의 평준화 기능, ③ 경영진의 근면성과 정직성 담보 기능, ④ 투자자의 자신감(신뢰성) 제고 기능, ⑤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한 치유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공시제도의 기능은 상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제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시제도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완석, 유가증권 발생시장의 공시제도, 한국학술정보 (2007), pp.35~41)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의 기본구조는 가장 상위법률로서 상법, 외감법,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실무규정으로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다음과 같은 한국거래소 하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규정

-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유가증권시장 공시전문인 인증기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증권상품시장 상장심사지침
 -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지침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코스닥시장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심사지침
-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지침
-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 코스닥시장 소속부 운영기준
-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지침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수수료면제 운영기준

- 전문가회의 운영기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의 기업공시제도 운영과 법제도 구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선행 보고서로서 「Jenkins Report」를 참고할 수 있다. 즉, 1994년에 발표된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Jenkins Report」는 기업공시에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에 취급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기본원칙은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기업공시제도의 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991년에 AICPA는 ① 기업의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및 ② 회계감사인(auditors)은 이러한 정보와 어느 정보 범위까지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지의 여부를 연구하기 위하여 “재무보고에 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Financial Reporting)”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기업공시에 관한 기본원칙부터 주요 이슈, 기본절차상 준수되어야 할 규범, 공시되어야 할 회계정보 등에 관한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종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이른바 「Jenkins Report」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Jenkins Report」에서는 서론에서 기업공시의 목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원칙적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⁴⁾

4) Improving business reporting- a customer focus; meeting the information needs of investors and creditors, AICPA, 1994, Chapter 1, pp.4-5

- 정보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기업공시는 다음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a) 경영진의 계획, 사업 및 투자기회, 위험 및 측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미래전망이 가능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한다.
 - (b) 중요한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비재무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 (c) 기업을 경영하는 상위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정보와 외부에 공시되는 정보와의 통합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 재무정보에 관하여 회계감사인이 갖는 관련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적인 회계감사인들은 기업과 회계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기업공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관련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 기업공시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하여 역할의 변화가 기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공시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집중과 이러한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보고가 가능한 비용편익분석의 수행⁵⁾
 - 공시정보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유형을 반영한 기업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인 시스템과 모델의 개발 및 유지
 - 공시정보이용자가 미래에 필요로 하는 미래정보와 미래기업환경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채택

5) 공시기준의 확정에 있어서 1단계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2단계로 실무적 차원의 정의가 필요하다. 특히 2단계의 작업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법적인 프레임에서의 논의와는 다르게 일정한 원칙적인 범위를 정하고, 이 안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표시 또한 명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보다 일정한 범위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칙적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⁶⁾과 외감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공시제도와 운영 방향에서 모두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서 변화와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Jenkins Report」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원칙사항들이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운영규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운영의 이유는 「Jenkins Report」의 원칙사항으로서 “미래전망이 가능한 정보”, “장기적인 이익의 계산”, “회계정보 이용에 필요한 범위” 등 법률로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법제도 안에서 구체화하여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법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률 이하의 하위규정이 보다 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공시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판단의 합리성과 위험회피의 성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awrence A. Cunningham, Finance Theory and Accounting Fraud: Fantastic Futures versus Conservative Histories,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78 (August 3, 2005), pp. 18-9)

- 6) 다만, 우리나라 상법상 공시제도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이사와의 의무와 관계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조문 또는 규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회사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기업공시의무에 관하여 이사의 의무를 연동시키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구조는 우리나라의 상법 즉, 회사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논의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상 이사의 책임구조가 미국의 이사 책임구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차이점이 있다는 법적 배경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공시주체로서의 이사 또는 경영진의 의무를 연계하여 권한·의무·책임의 삼각구조를 기업공시제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된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공시와 관련하여 법적인 구조와 의무의 프레임을 확장하여 도덕철학적인 측면에서 이사 또는 경영진의 규범적 논의를 진행한 연구결과도 있다. (Lyman Johnson, After Enron - Remembering Loyalty Discourse in Corporate Law, 28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2003)

2. 상 법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회사법이 상법에서 독립하여 개별적인 법률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법 내에 회사편으로 회사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가 독립하여 개별적인 회사법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상법내에 회사편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회사편 내의 공시규정들은 과거의 모습에 현재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독자적인 회사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공시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내 회사편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 또는 기업에 의한 공시제도는 “권리행사의 기회를 알리는 제도”, “권리실현을 위한 정보제공의 제도”, “회사관계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제도”가 중심적인 제도로서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에 의한 공시제도의 기능을 “권리의 실질화 기능”과 “지위의 평준화 기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권리행사의 기회를 알리는 제도”로서 “공고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합병에 관한 공고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회사채권자가 이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제도로서 간이합병공고제도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다수의 주주에 의한 반대를 무시하고 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반대표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간이합병에 반대를 표명하는 주주가 일정 비율에 이르렀을 경우, 간이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모집주식의 발행시에는 모집사항의 공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는 주식발행에 의해 이익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주에게 발행금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고”는 회사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알리고,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리행사를 실시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일시·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안되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행사의 기회를 알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주주 총회의 소집 통지도 공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⁷⁾

“권리실현을 위한 정보제공의 제도”라고 하면, 서면투표를 채택한 회사에서의 의결권 참고서류의 송부가 있다. 서면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주주가 의결권행사시에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주 총회에 출석했을 경우와 동등한 정보제공을 해당 주주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결권 행사 참고서류는 서면투표제도에 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회사 채권자는 영업 시간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 주주·회사 채권자는 각각의 입장과 목적에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⁸⁾

“회사관계자가 되기 위한 정보제공의 제도”가 있다. 여기에는 “회사관계자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업등기는 회사에 관한 여러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이지만, 회사와 거래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보 제공의 수단이 된다. 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도 이러한 정보는 유익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상업등기 제도는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와 가까운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업등기부에 공시되는 정보는 매우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회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보가 공시되지만, 회사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등기 정보만으로는 투

7) 川口恭弘, 開示制度の意義, 「企業情報の開示制度について」, 同志社大学監査制度研究会と関西支部監査実務研究会との共同研究会 (2009) pp.53~54.

8) 川口恭弘, 앞의 글, p.54.

자자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9)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공시규정이나 회계규정은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규정이나 기업회계기준을 상법상 규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장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원칙적인 규정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공시규정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실무적으로 위임되어져 있다. 따라서 상법상 공시관련 규정은 실무적인 규정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연혁적인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제29조의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규정은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사법을 포함한 상법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법의 기업공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제29조에서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에서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상업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 형식적·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관련 회계공시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10)

9) 川口恭弘, 앞의 글, p.54.

10) 이러한 상법상의 회계공시에 관한 원칙은 유한책임회사에도 적용되는데,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회계공시에 관한 원칙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회계공시와 관련하여 감사제도의 운용과 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396조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47조에서는 결산시에 부속명세서와 함께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받도록 한 재무제표에 관하여,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47조의2에서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였는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서류는 이사가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447조의4의 규정은 이사에게 재무제표와 서류를 받은 감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종 조항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져 작성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¹¹⁾

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1)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이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상업장부와 마찬가지로 비치·공시를 하여야 하는 제448조에서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장부와 마찬가지로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사는 제449조에 의하여 재무제표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과 동시에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의 각 서류를 일정한 요건¹²⁾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에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 회계원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중심적인 공시 관련 규정은 주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12) ①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②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식회사편에 규정되어져 있다. 특히, 제447조에서 이사가 결산기마다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로서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¹³⁾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외감법은 명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업감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사에 관한 법률이다.¹⁴⁾ 따라서 상법상의 감사에 관한 특별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의 회계감사에 관한 가장 중심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한 감사인이 감사의 주체가 되며, 상법상 회사편에 규정된 주식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다시 정하여 외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상법과의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외감대상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과 제출, 회계감사 절차,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 감사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리제도 등 회계감사와 관련된 특수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에 관한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외감법에 근거하여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감독당국과 회계감사인의 감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위임되어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회계 기준 및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관련된 부문의 개정인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외감법상 회계공시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감사업무에 관하여 국제감사실무위원회가 공표하는 기준 등을 기초로 감사의 개념 및 감사업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 감사라 함은 회계책임 사항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적극적 의견의 표명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감사내용에 관한 보증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다. 이를 어테스트 감사라고도 한다. ② 감사라 함은 회계책임 사항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한 목적 적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사항에 관한 적극적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다. 이를 직접보고감사라고 한다. (浦崎直浩, 企業情報開示システムの最適設計に資する監査制度の構築へ向けて—見積・予測財務情報の保証業務のあり方について, 「企業情報開示システムの最適設計」 第4編 IFRS導入と監査のあり方,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1-J-016 (2011.3), p.21)

외감법에서는 정의규정을 통하여 기존의 재무제표에 관한 정의와 함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재무제표”는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회사만을 의미)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① 연결재무상태표, ②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감법 제 2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이 아닌 회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외감법도 상법과 마찬가지로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감법은 회계감사기준과 함께 제13조에서 회계처리의 기준 또한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라는 표현을 명문화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13조 제3항

에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회계기준처리기준의 제정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회계기준제정기관)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감법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그리고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2에서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조에서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있는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보고서는 외감법 제14조에 의하여 재무제표와 함께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인 감사인도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외감법 제14조의2에서는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하는데, 이를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외감법은 회계공시를 위한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관련 제도운영과 함께 우리나라의 독특한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5조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의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과거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 법을 폐지통합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는 자본시

장 규율에 관한 기본법이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으로 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삼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②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전환된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③ 금융투자업의 상호간 겸업을 허용하여 금융업무의 범위 확대, ④ 투자권유 규제, 이해상충 방지, 발생공시 확대 등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공시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장, 유가증권의 신고 및 등록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발행시장공시제도”와 자본시장에서 증권의 효율적인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통시장공시제도” 그리고 기업의 경영상황과 활동 및 실적 등을 자본시장에 공시함으로써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특수공시”로 구분된다.¹⁵⁾ 정기공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의 제출과 공시가 주요 내용이고(제159조, 제160조), 수시공시는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의미하며(제161조),¹⁶⁾ 특수공시는 기업의 합병(M&A)과 분할, 영업양도 등 특수한 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지배구조 또는 지분의 변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¹⁷⁾

15) 이러한 공시는 이른바 법적·강행적 공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상 공시는 주주 또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가능한 이익과 담보력을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자본시장법상 공시는 미래의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공시로서 흔히 기업공시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본시장법상의 공시로서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에 대한 공시제도를 의미한다. (윤계섭·허희영,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12), p.4)

16)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시공시는 금융위원회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규제와 거래소의 수시공시에 의한 자율규제로 이원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공적규제인 주요사항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임시보고서를 모델로 한 것이며, 자율규제인 거래소의 수시공시제도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거래소의 공시규정으로 신고대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복,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박영사 (2012), p.375)

17) 이 중에서 특히, 분기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보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보고제도는 자본시장 공시의 투명성을 적시에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자본시장에서의 분기보고 제도의 시초는 미국의 공시제도가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에 있어서의

상기한 공시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제3편 증권발행 및 유통」에서 발행공시제도와 유통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사항의 공시와 상장법인 특례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정당시 변화된 사항으로 발행공시와 관련해서는 ① 투자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적인 서류로서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교부를 의무화하여, 발행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②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의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시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유통공시와 관련해서는 ① 수시공시 주관기관을 한국거래소로 단일화하여 기업들이 거래소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공시부담을 경감하는 등 수

4분기 재무정보 공시는 1902년 “United States Steel사”가 각 주주당 연차 보고서에 4분기마다의 주요 재무 데이터를 기재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에 1910년 뉴욕 증권거래소는 신규상장 회사에 4분기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1934년, 연방의회는 1934년 증권거래소법의 제정과 때를 같이하여, 동법 13조항 2호에서 4분기 정보의 공시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즉, 증권거래소법 제13조에 근거한 증권거래소 규칙 13a-13조에 의하여, 상장회사는 4분기 보고서를 각 4분기 후 45일 이내에 SEC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 의무는, 1953년에 폐지되었지만, 1955년에 매상고, 세금 공제 전 및 세금 공제 후의 순이익 등의 반기 보고서에 대한 공시가 의무로 규정되었고, 1970년에는, Form 10-Q에 의하여 비교계산서, 부채 및 자본 등 4분기 보고서의 작성이 다시 제도화 되었다. 이 제도는 1969년의 위트(Wit) 보고서의 도입안에 따른 것이다. 제도화 도입의 주된 이유로는, ① 4분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증가, ② 회사가 4분기 공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진전, ③ 연차 보고서 및 임시 보고서에서는 적시 공시로서 불충분하다는 비판, ④ 법률에 의한 4분기 재무 정보의 공시 내용의 통일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1975년, SEC는 4분기 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대폭 확충하여,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캐쉬 플로우 계산서, 경영 성적에 관한 경영자의 분석, 과거 2년간의 요약 손익 계산서를 재무제표의 각주에 붙이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4분기 재무제표의 SEC에 대한 제출은 각 4분기 후 45일에서 35일로 기간이 단축되었다. 1981년 SAS 제36호, 1991년의 SAS 제71호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리뷰에서 소극적 보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었다. 2000년 3월 15일 이후에 제출되는 4분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리뷰가 의무로 부담되었다. 리뷰는 4분기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고, 회사측의 이익 조작을 방지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今川嘉文, 企業情報開示と外部監査制度の強化, 神戸学院法学 第34卷 第2号 (2004.8), pp.423-427)

시공시 채널을 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였고, ② 수시공시 유보제도의 도입하여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공시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의 내용, 기업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을 공시하는 경영공시의무도 함께 규정되었다. 또한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정위반에 관한 제재바안으로 이른바 “공시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공시규정의 위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23조). 금융위원회는 ①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②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③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 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29조)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

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 159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0조). 이외에 중요한 규정으로서 이른바 수시공시제도의 의미를 가지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규정¹⁸⁾이

- 18)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제정을 위한 위임규정¹⁹⁾이 있다.

5. 주요 공시 관련 규정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은 외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외부감사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리업무 기준 및 절차 등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외감규정의 경우는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9) 제391조(공시규정)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한국거래소의 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행시장공시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실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상장제도에 관한 운영 및 절차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상위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게 되고, 개정과 보완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에 즈음하여 많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의 규정으로서 상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시장의 공시제도에 관한 규율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에는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이 가장 큰 이슈로서 주목을 받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 변화된 규정중에서 특징적인 규정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라서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규정의 보완이 주목할 규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

지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II.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상당한 기대효과를 예상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정착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회계기준의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계제도 운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기대효과를 이유로, 현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⁰⁾ 과거 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화하면서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① 규정중심 회계처리 방법에서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의 변화, ②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로 하여 작성·공시, ③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공정가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20)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논거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경제적, 사회적 측면 또는 국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다양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제적 신인도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 효과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기업투명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인이 되는 회계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디스카운트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되고 국가간 비교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다. 둘째, 국내 기업의 이중적 회계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수용은 해외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절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해외에 상장된 기업들이나 해외에서 차입하려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다시 국제회계기준(IFRS)이나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재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재무보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회계기준 제정비용 절감과 신뢰성 제고의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내 이해관계자 집단의 반발과 마찰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에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김이배, 회계투명성 제고-IFRS와 XBRL의 도입,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2009.12), p.239)

1.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기업의 활동과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경영자 및 시장의 투자자들은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원칙주의 회계기준으로서, 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과거 미국의 회계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²¹⁾ 따라서 미국의 회계기준과 우리나라의 과거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가 특정 회계기준의 적용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²²⁾

21) 김예경,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국제회계연구 제26집 (2009.6), pp.23~24.

22)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원칙중심 시스템(Principle-Based System)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원칙 준수와 원칙에 근거한 이행에 있어서 행위주체자들에게 부여되는 재량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로 법제적으로 윤리적인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셋째로 궁극적인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적극적이고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자본시장에서 상존하고 있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은 확실성과 명확성이 담보된 규제와 제도운영을 선호하게 되고, 감독규제권한을 행사하는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도 원칙이 아닌 규칙에 근거한 통제가 효과성면에서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감독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는 전제와 경향이 어느 국가나 어느 시기에 있어서 지배적이었던 점이 원칙중심 시스템에 대한 중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원칙중심(principle based)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정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²³⁾

- ① 회계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 내에서 예외 규정 지양 (No exceptions)
 - ② 회계기준 내에서 목적과 핵심원칙 (Core principles)을 명확하게 기술
 - ③ 회계기준서 간 일관성 유지 (No inconsistencies among Standards)
 - ④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규정 (Tied to conceptual framework). 또한 개념체계와 다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
 - ⑤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Relies on judgement). 또한 판단하고 선택한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
 - ⑥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Minimum guidance)
- 원칙주의 회계기준은 산업별 회계처리기준은 가능한 한 절제하고, 해석서를 원칙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데, 이는 기업 스스로 경제적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방법을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

요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Lawrence A. Cunningham, A Prescription to Retire the Rhetoric of “Principles-Based Systems” in Corporate Law, Securities Regulation and Accounting, BOSTON COLLEGE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127 (March 13, 2007), pp. 48-49)

23) 김노창 · 권성수 · 심태섭, 국제회계기준의 판단적 용어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12), p.399.

에 비하여 규칙주의 회계기준은 미국의 GAAP와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계량화하고, 산업별 기준을 제정하며, 또한 각 세부적 상황에 따른 해석서를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에 따라 회계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²⁴⁾

원칙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양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재량적으로 재무제표의 양식 및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 손익항목의 구분표시 여부 등 결정이 가능하며,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및 측정에 대해서도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회계처리는 회계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데, 대신에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식 공시 사항이 대폭 확대되었다.²⁵⁾

2.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전 한국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재무제표(즉, K-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공시하여 왔으며,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K-개별재무제표에 부수하여 추가로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

24) 김병호,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채택과 회계품질의 변화, KRX Market (2009.12), p.14.

25) 금융감독원, 한국의 IFRS 도입, 시행과 교훈, 금융감독원 (2012.12), p.15 ; 이외에도 원칙주의와 규칙주의의 회계처리방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리스의 회계처리에서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75% 이상이 리스기간인 경우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한다는 것은 규칙주의인데 반하여,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주요 부분이 리스기간인 경우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은 원칙주의에 해당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서 기존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30% 초과 최대주주이면 반드시 연결하여야 하지만, K-IFRS의 경우 반드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도 원칙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병호, 앞의글, p.14)

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이용자는 연결재무제표보다는 먼저 공시되는 K-개별재무제표를 중시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자본시장의 관점이 개별기업의 가치보다 연결실체의 가치 극대화로 변경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등 기업의 공시제도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변화하였다.²⁶⁾

즉, 과거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시하였던 시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기능이란 개별재무제표에 부수하여 추가로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이용자는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개별재무제표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는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게 된다.²⁷⁾

한편으로, 과거에는 피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연결판단기준을 일원화하였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지배력 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을 제시하였으며,²⁸⁾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6) 금융감독원, 앞의 자료, p.21.

27)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연결범위의 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하고 있다. 즉, 50%초과 소유주주 또는 실질 지배력이 있는 경우 연결대상이 되며, 자산 70억 미만의 기업도 연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기준에 비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되고,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의 공시할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며, 연결범위의 경우 소유지분을 50% 초과인 경우와 실질지배력 기준 등은 유사하나, 과거의 경우 30% 초과 최대주주이면 반드시 연결하여야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반드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 실무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이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실질 관계에 따라 지배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김병호, 앞의 글, pp.16~17)

28) 과거에는 경제활동에서 효익(benefits)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배력(control)을 정의하였던 반면,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는 과거 지배력의 정의상 효익을 위협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variable

경우 연결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실무지침을 제공하였고,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취득하고 잔여 의결권 52%는 수천명의 주주들이 조금씩 보유하고 조직적인 단합움직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등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 기반의 공시제도 운영을 정착하도록 하였다.²⁹⁾

<표 2-1>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및 경과규정 제·개정 요약

기준번호	제 목	구 분	주요 내용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 정	현행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연결부분과 제2012호(연결: 특수목적기업)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고 다양한 지침 및 사례 제시
제1111호	공동약정	제 정	조인트벤처(공동지배 사업·자산·기업)의 명칭을 공동약정(공동기업·공동영업)으로 변경. 공동기업은 지분법만 허용하고 공동영업은 직접 소유한 것과 같이 처리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 정	제1110호 등에 언급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에 관한 공시사항을 일괄하여 규정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 정	연결부분을 제1110호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기준 및 관

returns)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의 3요소는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해 변동이익에 노출(exposure)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를 보유, ③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배력에 대한 단일개념을 정의하였다. (금융위원회,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개정, 보도자료 (2012.11.28.), p.2)

29) 금융위원회, 앞의 자료, p.2.

기준번호	제 목	구 분	주요 내용
			련 공시사항만 유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 정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만을 적용 토록 함에 따라 관계기업뿐 아니 라 공동기업도 대상에 포함
경과규정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경과규정	개 정	개정기준의 소급적용이 최소화되 도록 경과규정 내용을 명시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 출처: 금융위원회,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개정, 보도자료 (2012.11.28.), pp.8~9

3. 공정가치 평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공정가치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에서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에 관하여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선택규정으로 권장하고 있다. 역사적 가치에 대한 회계평가가 더 우수한가, 아니면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가 더 우수한가의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회계처리와 공시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결론으로 광범위하게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³⁰⁾

30) 이창우·송인만·고승의·박대준,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 방안, 금융감독원 (2008.2), p.15.

- ①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을 판매하고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고 지급할 가격이다.
- ② 공정가치는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측정된다.
- ③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측정된다.
- ④ 자산의 판매나 사용에 대한 제약조건이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
- ⑤ 부채의 공정가치는 부채에 관련된 미이행 위험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이 설명될 수 있는 공정가치평가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하 회계처리 원칙으로 적용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공정가치평가의 적용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치 평가 경우의 예시로서는 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에 기초한 재평가모형이 적용 가능, ③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모형 적용이 가능, ④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 ⑤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측정하여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⑥ 사업결합시 지분통합법을 폐지하고 취득법만 인정하며, 취득법 하에서는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하는 자산 및 인수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 ⑦ 비화폐성자산 간의 교환거래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취득원가 측정, ⑧ 생물자산 및 수확물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 등을 제시할 수 있다.³¹⁾

3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무적으로 공정가치평가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이 적용 가능하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임대부동산을 포함한 투자부동산에 대해 매기 말 공정가치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성 상의 분류에 의하면, 건설계약(기준서 제1011호), 유형자산(기준서 제1016호), 리스(기준서 제1017호), 수익(기준서 제1018호), 종업원급여(기준서 제1019호), 정부보조금(기준서 제1020호), 환율변동효과(기준서 제1021호), 관계기업 투자(기준서 제1028호), 조인트벤처 투자(기준서 제1029호), 금융상품: 표시(기준서 제1032호), 자산손상(기준서 제1036호), 무형자산(기준서 제1038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준서 제1039호), 투자부동산(기준서 제1040호), 농림어업(기준서 제1041호), 주식기준보상(기준서 제1102호), 사업결합(기준서 제1103호) 등이 공정가치평가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³²⁾

4.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내용

최근에는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하였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연결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한 것으로서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데,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투자자산을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였다.³³⁾

자산재평가가시 발생하는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손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실에 반영하고, 이익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④ 원가모형을 선택하더라도 공정가치를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부채는 확정기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 수리적 방법으로 예측급여를 추정하여 반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험부채는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김병호, 앞의 글, p.15)

32) 신현걸, 공정가치평가, 한국금융연수원 WEBZINE (2010. 가을)

(http://webzine.kbi.or.kr/WEBZINE02/201003/02_focus/index.asp)

33) 금융위원회,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보도자료 (2013.6.19.), p.1~2.

또한,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판단에 관한 사항, 해당 종속기업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였고, 기업이 자신을 “투자기업”이라고 판단한 경우³⁴⁾ 그러한 사실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그러한 사실과 해당 종속기업의 명칭·주된 사업장 등을 공시해야 한다.³⁵⁾

Ⅲ.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의 도입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제정한 국제감사기준으로서 국제회계사연맹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감사방식인 절차중심의 접근방식(system-based approach)의 감사수행방식에서 위험평가에 기반한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새로운 국제감사기준의 초안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전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용한 감사기준이다. 따라서 신국제감사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은 “위험평가에 기

34) 투자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① 투자관리용역 제공, ② 시세차익 또는 투자수익만을 위한 사업목적, ③ 공정가치 측정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K-IFRS 제1110호 문단 27) 투자관리용역(investment management service)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여야 하고, 사업목적이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예를 들어, 배당이나 이자)을 위한 투자활동만이 유일한 사업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투자기업은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므로 투자자산을 제한된 기간 동안만 보유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해당 투자자산의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공정가치 측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가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항상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투자자산을 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공정가치 정보가 보고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투자자산의 성과평가·투자 의사결정 등을 위해 공정가치를 주요 측정치로 사용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앞의 자료, p.4)

35) 금융위원회, 앞의 자료, p.2.

반한 감사접근 방식”인데,³⁶⁾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우선적으로 “목표지향적 접근방식(objectives oriented approach)”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³⁷⁾

우리나라의 신국제감사기준 도입목적은 글로벌스탠더드인 최신의 국제감사기준을 수용함에 따라 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감사기준의 명료성 강화를 통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며, 목적중심 (Objectives-based) · 위험중심(Risk-based) 감사접근법을 통해 감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다는 목적 이외에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연결실체중심의 회계감사기준을 도입하여, 연결감사에 대한 책임 일원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³⁸⁾

“목표지향 접근방식”은 개별 감사기준마다 목표를 별도로 구분하는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감사인이 절차보다는 목표달성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사연맹이 향후 각 기준을 통하여 제정할 전문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위험평가에 기반한 접근방식은 기업의 사업전략을 이해하고, 사업위험(business risk) 관점에서 감사위험을 파악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사위험 평가결과와 후속감사절차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는 점이

36)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험평가에 기반한 감사접근 방법을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즉, 위험평가에 기반한 감사접근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사업위험이 높은 경우 이에 적합하도록 자금문제 등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에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계정의 입증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위험평가에 기반한 감사접근방법인데, 기존의 감리절차는 절차 중심의 감사와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리이기 때문에 부정이 적발되는 경우에 감사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서, 결과가 잘못되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한 다음 감사를 어떻게 했나를 보는 사후적인 감리방식에서는 위험평가 기반 접근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 (권수영 · 이영한 · 황문호, 국제회계기준(IFRS) 및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11.6), p.57)

37) 권수영 · 이영한 · 황문호, 앞의글, p.34.

38) 금융위원회, 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 보도자료 (2012. 12.12.), p.2.

주요 내용이다.³⁹⁾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신국제감사기준의 주요내용은, ① 주제별 기준서(총 33개)마다 감사목적에 상세히 제시하고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사항 등을 기술함으로써 감사목적 중심(Objectives-oriented Approach)으로 기준서의 체계를 수립하고, ② 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범성⁴⁰⁾을 강화하고, 감사기준의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를 통하여 세부지침 등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감사기준의 규범성 및 명료성을 강화하며, ③ 경영전략과 경영진 특성 등 기업의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가능한 재무정보 왜곡가능성(위험)을 파악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접근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위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을 강조하고, ④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하에 연결감사업무를 수행(중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에 대한 관여 포함)하고, 연결감사의견은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하게 함으로써 연결 감사인(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39)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앞의 글, p.34.

40) 기업에 관한 사회적 규범의 기능은 잠재적으로 기업행위 주체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은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규제적인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규제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규범에 근거한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의 견해에서는 기업공시에 관련된 규범은 공시의무자들이 스스로의 수치심이나 집단에서의 배척 또는 낭패와 같은 사회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인정되는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견해에서는 “신뢰”와 “이타주의”의 사상과 개념을 논의의 핵심으로 원용하여 신뢰와 같은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회사의 경영진과 공시의무자들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장에 의한 규율은 기업공시와 같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회사내부의 이익 충돌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하여만 미약하게나마 제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회가경영진이나 공시의무자들이 충만한 주의와 전문가적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감을 조장하고 부담시킴으로써 스스로 자제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nee M. Jones, Law, Norms, and the Breakdown of the Board: Promoting Accountability in Corporate Governance, 92 IOWA L. REV. 105 (November, 2006), pp. 124-26)

등이 주요 도입내용이다.⁴¹⁾

<표 2-2> 33개 신국제회계감사기준서

기준서 번호	회계감사기준 제목	국제감사기준 제목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Overall Objective of the Independent Auditor, and the Conduct of an Audi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Agreeing the Terms of Audit Engagements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for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230	감사문서	Audit Documentation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The Auditor's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Fraud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Consider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ng Deficiencies in Internal Control to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Management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Planning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41) 금융위원회, 앞의 자료, pp.2~3.

제 2 장 자본시장 공시제도 개편과 글로벌 변화

기준서 번호	회계감사기준 제목	국제감사기준 제목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Identifying and Assessing the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 Through Understanding the Entity and Its Environment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Materiality in Planning and Performing an Audit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The Auditor's Responses to Assessed Risks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Audit Considerations Relating to an Entity Using a Service Organization
450	감사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Evaluation of Misstatements Identified during the Audit
500	감사증거	Audit Evidence
501	감사증거 - 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Audit Evidence - Specific Considerations For Selected Items
505	외부확인	External Confirmations
510	초도감사 - 기초잔액	Initial Audit Engagements – Opening Balances
520	분석적 절차	Analytical Procedures
530	표본감사	Audit Sampling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Auditing Accounting Estimates, Including Fair Value Accounting Estimates, and Related Disclosures
550	특수관계자	Related Parties
560	후속사건	Subsequent Events

제 1 절 우리나라 자본시장 공시제도 법제와 변화

기준서 번호	회계감사기준 제목	국제감사기준 제목
570	계속기업	Going Concern
580	서면진술	Written Representations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Special Considerations – Audits of Group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the Work of Component Auditors)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Using the Work of Internal Auditors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Using the Work of an Auditor’s Expert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과 보고	Forming an Opinion and Reporting on Financial Statements
705	감사의견의 변형	Modifications to the Opinion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Emphasis of Matter Paragraphs and Other Matter(s) Paragraphs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 재무제표	Comparative Information – Corresponding Figures and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s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The Auditor’s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Other Information in Documents Containing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 출처: 금융위원회, 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 보도자료 (2012.12.12.), pp.6~7.

<표 2-3>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신·구 비교

기준서 번호	현행 회계감사기준 제목	개정 회계감사기준 제목
100	총 칙	<폐 지>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210	감사계약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220	감사의 품질관리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230	문서화	감사문서
240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50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법률과 제규정에 대한 고려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260	내부감시관련 감사문제에 관한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265	<신 설>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300	감사계획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310	사업에 대한 이해	<폐 지>
315	<신 설>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320	감사의 중요성 원칙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330	<신 설>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400	감사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	<폐 지>

제 1 절 우리나라 자본시장 공시제도 법제와 변화

기준서 번호	현행 회계감사기준 제목	개정 회계감사기준 제목
401	정보시스템 환경에서의 감사	<폐 지>
402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 고려할 사항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450	<신 설>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500	감사증거	감사증거
501	감사증거 - 구체적 항목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	감사증거 - 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505	외부조회	외부확인
510	초도감사 - 기초잔액의 감사	초도감사 - 기초잔액
520	분석적 절차	분석적 절차
530	표본감사와 기타의 추출방법에 의한 시사(test)절차	표본감사
540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에 대한 감사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545	공정가치의 평가와 그 공시에 대한 감사	<폐 지>
550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560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후속사건
570	계속기업	계속기업
580	경영자진술	서면진술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610	내부감사업무의 고려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620	전문가의 활용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기준서 번호	현행 회계감사기준 제목	개정 회계감사기준 제목
		의 활용
70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705	<신 설>	감사의견의 변형
706	<신 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 타사항문단
710	비교정보	비교정보-대응수치 및 비교재무 제표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내의 기타의 정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 된 감사인의 책임
800	중소기업 재무제표감사의 특례	<폐 지>
	총 31개 감사기준	총 33개 감사기준서

※ 출처: 금융위원회, 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 보도자료 (2012.12.12.), pp.8~9

IV.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변화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회계감독에 있어서 중심적인 회계감리제도의 변화를 더욱 큰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회계감리제도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와 이에 대한 회계감독은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상장, 비상장기업에 무관하게 모두 외감법에 의하여 감사가 수행되는 환경으로서, 자율적인 자본시장 혹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및 요청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기보

다는 법적, 제도적 규정 하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자율적인 감사가 아닌 법정 감사이므로 회계감독체계 또한 상장사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감사에 대하여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주로 상장회사 위주의 감사관련 규제가 존재하는 미국, 영국 등의 해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중요한 감사환경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표 2-4> 주요국의 재무제표 심사제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미 국	영 국	일 본	캐나다	호 주
감독 기구	증권위 (금감원)	SEC	FRRP	SESC	SC	ASIC
심사 목적	회계분식 혐의포착 (감사보고 서감리 과정)	공시 품질 제고	공시 품질 제고	분식 혐의 사전 조사	공시 품질 제고	공시 품질 제고
대상 선정	표본추출	3년 주기 (상장 회사)	선제적 방식 및 표본 추출	내부 분석 및 유관 기관 정보	선제적 방식 및 표본 추출	4년 주기 (상장 회사)
심사 방법	분석적 검토	통계적 분석 및 정보의 충실성 검토	분석적 검토 / 특정 issue 심사	종합적 분석 혐의 조사	특정 issue 또는 종합적 심사	분석적 검토

42) 권수영 · 이영한 · 황문호, 앞의 글, p.41.

구 분	우리나라	미 국	영 국	일 본	캐나다	호 주
사후 조치	정밀감리 단계로 진행	수정 공시 요구 또는 조사국 이첩	수정 공시 유도 또는 시정 명령 요청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재무 제표 재작성 또는 벌과금 부과	수정 공시 요구 또는 벌과금 부과

※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과 주요 5개국 회계제도 비교분석 (2008),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회계감독제도 비교 및 시사점 (2006) 권수영 · 이영한 · 황문호, 국제회계기준(IFRS) 및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11.6), p.43

우리나라의 감리업무 즉, 회계공시에 대한 감독은 외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과 회계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독업무를 직접 보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외감법상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수권되어져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및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감법상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감사보고서 감리 이외에 일정규모 미만의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에 한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감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⁴³⁾

43)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회계감리제도는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

상기의 현행 법제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은 감리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은 근본적으로 감사시장에서 활동하는 감사인과 자본시장에서 공시하는 기업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감독당국에게 있어서 많은 인식 변화를 요청하게 된다. 기존의 규정중심 회계기준의 특성이었던 명확성과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대신에, 감사인의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전문가적 판단과 위험중심의 감사기준에서 나타는 감사 절차 위주의 감사방식은 이를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감리제도의 운영 또한 이에 부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감리기준 위

의 도입 이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감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리제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재무제표 작성의 1차적인 책임이 기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무제표 작성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회계감독을 실시하기보다 이를 감사하는 감사인을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를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 감리제도가 사후적발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현행 감사보고서감리는 이미 과거에 공시된 재무제표를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회계부정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주로 감사인에 대한 조사와 징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된 외감법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 6월부터 단계적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③ 감사보고서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재무제표 작성의 주된 책임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인에 대해서도 지나친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기업의 경영자에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기업에 묻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보다 회계감사기준에 입각해서 부실감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감리결과 징계조치를 함에 있어 공인회계사 개인과 회계법인 모두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회계법인의 행정처벌 건수가 많아지고, PCAOB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시 중심의 회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을 직접 감독하고 심사결과를 공시정보에 즉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회계감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원선·유재권, 품질관리감리와 감사보고서감리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금융감독원(2011.12), pp.17~18)

반에 해당되어 처벌받는 경우 현행 양정기준이 갖고 있는 경직성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 연결채무제표 중심의 회계처리와 감사는 지배 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간의 책임분배 문제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감리지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국제감사기준이 위험중심의 위험평가와 감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리제도 또한 감사보고서 상의 위험평가에 중점을 두고 감리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평가 중심의 감리제도는 품질관리감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품질관리감리제도의 평가항목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 2 절 외국의 자본시장 공시제도

I. 미 국

1. 미국 공시제도와 법제

(1) 개 요

미국의 자본시장 공시제도는 다른 부문의 법제처럼 연방법률과 개별 주의 법률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증권시장을 관할·감독하는 6개의 연방법률이 존재한다.⁴⁴⁾ 이중에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 증권을 규제하는 주요 연방법률로서 미국 자본시장의

44) Securities Act of 1933 (Truth in Securities Act), 15 U.S.C. §§ 77a-77aa (2006);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 U.S.C. §§ 78a-78nn (2006); Trust Indenture Act of 1939, 15 U.S.C. §§ 77aaa-77bbbb (2006);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15 U.S.C. §§ 78aaa-78lll (2006);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15 U.S.C. §§ 80a-1-80a-64 (2006);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15 U.S.C. §§ 80b-1to 80b-21 (2006).

공시제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법률이다. 즉, 증권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인 1933년 증권법(Security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y Exchange Act of 1934)에 의하여 기업회계정보공시와 재무보고를 규제하고 있는데, 1933년 증권법의 주된 목적은 증권의 신규공모와 증권의 실질적인 판매에 관하여 규제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1934년법 증권거래법의 주된 목적은 신규공모 이후 증권의 거래에 관하여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⁵⁾

연방법률 이외에 개별 주에서 입법하여 운영하는 주법으로서, 모든 주(State)는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증권의 청약과 매도를 규제하는 소위 청공법(blue sky law)⁴⁶⁾이라고 불리는 자체적인 일련의 증권법들을 구비하고 있다. 청공법은 39개 주에서 통과된 1956년 통일증권법(Uniform Securities Act)⁴⁷⁾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각 주마다 상당한 차이점도 존재한다.⁴⁸⁾

(2) 주요 법률

①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1933년 증권법은 본격적으로 공시주의 또는 공개주의를 천명함으로써 상장되는 주식에 대한 중요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하며, 주식거래에 있어서 사기적인 방법에 의한 허위보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의 발행을 직접 규제

45) 노회진 외 7인, 우리나라 회계 관련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8.3), p.75.

46) 靑空(Blue Sky)이란 사업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늘의 일부분(so many feet of blue sky)과 같이 아무런 실질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것이라도 팔려고 할 것이라는 판례의 표현에서 유래된 것인데, 투기적인 책략들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Hall v. Geiger-Jones Co., 242 U.S. 539, 550 (1917).

47) 7B Unif.L. Ann. 69-132 (Supp. 1992). 1956년 통일증권법(Uniform Securities Act)은 39개 주에서 채택되어 주법의 통일을 상당히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

48) 1985년에는 개정통일증권법(Revised Uniform Securities Act)이 제안되었으나, 거의 어떤 주에서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Mark A. Sargent, Some thoughts on the Revised Uniform Securities Act, 14 Securities Regulation Law Journal 62 (1986).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나 발행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증권을 발행할 때 그것이 어떤 증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⁴⁹⁾ 1933년 증권법의 주요 내용은, ① 특수한 증권에 관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발행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제출함과 아울러 증권의 구입자에게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교부를 의무화하였고,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증권을 각 주간(interstate commerce)으로 또는 우편으로 매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② 등록할 때에는 독립 공공회계사에 의하여 증명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공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만일 등록신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잘못 기술하였다든가 또는 그것을 생략한 경우에 그 증권을 취득한 사람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등록신고서가 적절치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등록신고서의 효력정지명령을 하여 신고효력의 발생과 그 증권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⁰⁾

②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933년 증권법이 의회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 해에 추가적인 증권법의 제정을 진행하게 된다. 1934년에 제정된 증권법은 법의 명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증권을 발행한 후에 증권거래에 수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증권관계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1934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다.⁵¹⁾

49) 이정호, 미국에 있어서 현대 재무공시의 기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논집 제35권 1호 (2001.3), p.125.

50) 이정호, 앞의 글, pp.125~126.

51) 이정호, 앞의 글, p.126.

1934년 증권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① 신규 및 이미 발행한 증권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자는 그 거래소와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서는 상장할 수 없으며, ② 모든 증권거래소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③ 거래소에서의 거래방법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규제의 권한을 갖으며, ④ 증권의 발행자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및 그 밖의 것을 증권거래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 최근의 정보를 공표해야 하며, ⑤ 점두거래회사(over-the-counter transaction corporation)의 경우도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⑥ (6) 증권거래금융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에 상응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그것을 지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⁵²⁾

2. 공시제도 운영 및 규제 기구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설립되었는데, SEC는 일반대중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되는 증권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완전하고 공정한 공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매매에 관계되는 기업, 투자회사 등을 규제하게 되었고, 1973년에 회계처리기준제정 권한은 회계 관련 전문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관인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에 위임되어 FASB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을 제정하게 되었다.⁵³⁾

미국의 경우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들에게 연차 재무제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재

52) 이정호, 앞의 글, p.126.

53) 노회진 외 7인, 앞의 책, pp.77~78.

무제표의 종류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를 열거하고 있으며, 연차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담당 책임자(대표)는 재무제표가 GAAP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FASB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원칙과 회사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⁴⁾

SEC가 회계공시제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발행시장 규제인 1933년 증권법과 유통시장 규제인 1934년 증권거래법을 기초로 신고양식과 기재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SEC에 의한 계속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대별되는데 정기공시는 연차보고서(양식 10-K), 분기보고서(양식 10-Q)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시공시는 임시보고서(양식 8-K)와 거래소에 의한 적시공시가 대표적이다.⁵⁵⁾

SEC내에서 회계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DCF), Division of Enforcement(DOE), Office of the Chief Accountant(OCA)인데, DCF(기업재무국)는 정기 사업보고서 위주로 재무제표, MD&A 등 주요 공시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review)함으로써 공시품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심사는 조사(investigation)나 감사(audit)와 달리 기업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보의 충실성(completeness)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오류나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의견서(comment letter)를 발송하여 공시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하지만, 위반혐의가 과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DOE(조사국)로 이첩한다.⁵⁶⁾

DOE(조사국)는 DCF(기업재무국)의 심사결과 통보사항 및 자율규제기관 통보사항, 언론보도, 투자자 제보사항, 자체적인 감시활동 등을 토대

54) 정태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이행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2010.12), p.128.

55) 정태범, 앞의 글, p.129.

56) 권수영 · 이영한 · 황문호,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10.5), pp.47~48.

로 회계공시기준에 위반혐의가 상당한 기업에 대하여 조사(investigation)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가 확정되면 SEC의 승인을 거쳐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행정절차(administrative proceedings)를 통해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SEC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민사소송(Civil Actions)을 통해 제재한다.⁵⁷⁾

OCA(수석회계사실)은 회계 및 감사제도 등과 관련하여 SEC를 자문하는 독립부서로서 회계제도부문, 회계업계 감독부문, 국제협력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문은 DCF와 DOE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PCAOB와 FASB등 관련 단체를 감독한다.⁵⁸⁾

3. 발행시장 공시제도

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 발행인은 SEC에 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Schedule A 에 열거된 사항을 기재·첨부해야 한다.(1933년법 Section 7) SEC는 등록신고서에 포함되는 정보, 등록신고서와 사업설명서 규제, 서식(form)제정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며, (1933년법 Section 7, Section 19), 이를 통하여 공시내용을 규제하게 된다.⁵⁹⁾

따라서 미국에서는 등록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주간통상 수단을 사용하여 증권을 매도하거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SEC에 등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증권의 매도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② 제출 후 효력발생 전까지는 증권의 매도노력이 일정부분 제한되고, 증권의 매도는 전면 금지되며, ③ 효력발생 이후에도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매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1933년 증권법의 제5조는 이와 관련하여 기간을 세 가지 즉, 최초의 등록신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인 준비기간(pre-filing period), 등록신고서가 제출된

57)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앞의 책, p.48.

58)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앞의 책, p.48.

59) 김성진, 미국의 기업공시제도 현황, “국가별 기업공시제도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10.18), p.16.

후 효력발생일 전까지의 기간인 대기기간(waiting period), 효력발생 후 기간(post-effective period)으로 구분하고, 증권이 발행등록과 매수권유를 기간별로 규제하고 있다.⁶⁰⁾

1933년 증권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시 SEC에 제출하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모집·매출시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설명서(prospectus)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등록신고서에 포함되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는 발행인의 사업·재산 및 경영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로서, 재무제표에는 등록일 90일 전 이내의 대차대조표, 과거 3개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등록신고서가 제출되면 SEC는 신고내용의 적법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SEC는 등록신고서의 효력 발생전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거부명령(refusal order)을 취할 수 있으며, (1933년법 Section 8(b)) 신고서의 내용에 중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정지명령(stop order)을 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1933년법 Section 8(d))⁶¹⁾

미국의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의 공모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주요 공시자료로서, 1933년 증권법은 사업설명서의 교부를 강제하고 있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SEC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후 효력 발생시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신고서에 기재된 주요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한 기간동안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 배포되는 예비적 성격의 사업설명서인 예비사업설명서(preliminary prospectus)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⁶²⁾

60) 김성진, 앞의 글, p.16.

61) 김성진, 앞의 글, p.17~18.

62) 김문현·정윤모·손영락·김란영, 한·미·일 공시제도의 현황 및 비교, 한국증

4. 유통시장 공시제도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은 1933년 증권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주로 발행인의 계속공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미국의 유통시장 공시제도에 대한 주요 법률인 1934년 증권거래법 상에서 등록회사에게 일반적으로 네 가지 계속공시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데, ①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 제출의무(1934년 증권거래법 Section 13, 15(d)), ② 등록조건에 대한 위임장권유(solicitation of proxies) 시 SEC 규칙 준수 의무, ③ 공개매수 규제 및 실질지분보고서(beneficial ownership report) 제출의무, ④ 내부자거래(inside trading)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으로서 SEC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의 중복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 1934년 증권거래법 상 보고회사에 대하여는 통합공시와 일괄 신고제도 이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⁶³⁾

1934년 증권거래법상 유통공시는 상기 네 가지 중 첫째인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와 관련된 계속공시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정기보고의무와 적시공시의무가 있고, 따라서 1934년 증권거래법상 등록회사는 정기보고서(연차보고서·분기보고서·임시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요정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정기보고서는 SEC에서 규제하고, 적시공시는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⁶⁴⁾

연차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분기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SEC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 양식, 내용 등은 Regulation S-X에서 다루고 있으며, 비재무정보에 대해서는 Regulation S-K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임시보고서는

권연구원 (2001.7), p.155.

63) 김성진, 앞의 글, pp.20~21.

64) 김성진, 앞의 글, p.21.

지배권의 변화, 중요 재산의 이전, 도산 절차의 공시 등과 같은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5일 또는 15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⁶⁵⁾

미국의 경우 공인회계사 변경, 경영자의 사임, 지배주주의 변동,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 파산 및 은행관리, 결산기 변경 등이 발생하면 5일 또는 15일 이내에 당해 기업이 임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때 가급적이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⁶⁶⁾

미국의 유통시장 공시제도에 있어서 중시되고 있는 분기보고제도는 예측정보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⁶⁷⁾ 즉, 미국은 분기보고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분기보고서에 예측정보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미국 증권법 연혁상 논의가 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상고와 이익 및 수요 등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러한 재무적 수치정보에 관한 이해능력이 기업경영자보다 뒤떨어지지만,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는 증권분석가 및 여러 미디어의 채널을 통하여 유포된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기업이 제공한 예측정보에 과대한 신뢰를 갖지 않지만, 증권회사 또는 기관투자자 등 특정의 시장 참가자만이 비공식적 혹은 독

65) 정대범, 앞의 글, p.129.

66) 김문현·정윤모·손영락·김란영, 앞의 책, p.162.

67) 예측정보는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관한 가정 및 실체에 의하여 확실히 발생할 행동에 관한 가정에 근거한 정보이다. 예측정보의 종류로는 ① 협의의 예측정보와 ② 프로젝션 정보가 있다. “협의의 예측정보”는 경영관리자가 기대하는 장래 상황 및 정보의 작성 시점에서 채택하여 기대하는 행동에 관한 가정(최선의 가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정보이다. “프로젝션 정보”는 장래 상황 및 반드시 발생된다고는 기대되지 않는 경영관리자의 행동에 관하여 가설적 가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정보 또는 최선의 가정과 가설적 가정이 혼재되어 작성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浦崎直浩, 企業情報開示システムの最適設計に資する監査制度の構築へ向けて－見積・予測財務情報の保証業務のあり方について, 「企業情報開示システムの最適設計」 第4編 IFRS導入と監査のあり方,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1-J-016 (2011. 3), p.24)

자적인 방법으로 여러 회사의 예측 정보를 알게 된다. 이 때문에 더욱 더 일반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투자에 필요한 다각적이고 풍부한 정보량, 정보의 질에 대하여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SEC는 1979년, “예측이 합리적인 것이고, 선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고 기업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미래예측은 사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 규칙”⁶⁸⁾을 1933년 「증

68) SEC의 세이프·하버 규칙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① 세이프 하버 규칙은 표시한 예측 정보를 SEC에의 신고서류 또는 주주에게 송부되는 연차 보고서로 재확인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많은 민사 소송에서 다투어진 예측 정보는 피고 회사측이 구두로 발표하거나 문서에 기재되는 것으로 하더라도, 신고서류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② 세이프 하버 규칙은, 예상된 공시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세이프 하버 규칙의 적용은 SEC에 제출되는 서류에 제한되고 있으며, 발행자가 각각의 장래에 관한 표시를 SEC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③ 세이프 하버 규칙은 발행자가 기자 발표 및 증권분석가의 예측과 같은 SEC에의 신고 이외의 매체에 의해 장래에 관한 공시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들은 세이프 하버 규칙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피고가 되는 회사는 항변으로서 빈번하게 세이프 하버 규칙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소송절차상, 피고가 세이프 하버 규칙의 “성실” 및 “합리적인 근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시간과 비용이 들며, 또한 사실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SEC의 세이프 하버 규칙은 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SEC의 세이프 하버 규칙은 기자 발표 등에 의한 적시공시(timely disclosure)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자가 임의로 행한 예측 정보의 표시가 후에 문제되는 것도 많았다. 그러므로, SEC의 세이프 하버 규칙이 예측 정보의 공시에 대해서 반드시 증권의 발행자 및 그 경영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측의 표시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 투자자는 “공시서류는 오해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주장하여, 증권의 발행자를 제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SEC의 세이프 하버 규칙은 전술한 것처럼, 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아니었다. 그래서 연방 재판소는 Bespeak Caution(주의 표시)의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해 왔다. Bespeak Caution 법리라는 것은, “낙관적인 예측 정보의 표시가 특정의 리스크를 지적하는 충분한 주의 문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투자 판단을 오도하는 표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즉, 증권의 발행자가 행한 예측 정보에 있어서, “충분히 주의를 재촉하는” 언급이 있으면, Bespeak Caution 법리에 근거하여, 1933년 증권법 11조 및 12조 2호 및 1934년 증권거래소법 10조 b항 및 동법 규칙 10(b)-5에 근거한 증권사기에 대하여, 원고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Bespeak Caution 법리는 예측 정보의 표시에 적용되며, 현재의 사실에 관한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SEC의 세이프 하버 규칙과 달리, SEC에 대한 제출 서류 이외로 된 예측 정보의 표시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Bespeak Caution 법리는, SEC에 대한 제출 서류인지 아닌지, 구두로 이루어진 것인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묻지

권법 규칙 175」 및 「1934년 증권거래소법 규칙 3b-6」을 제정하였다. SEC가 제정한 「증권법 규칙 175」 및 「1934년 증권거래소법 규칙 3b-6」은 규제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세이프 하버 규칙”은 “발행자에 의하여 또는 발행자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회사 외의 심사자에 의한 장래에 관한 표시는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거나 또는 재확인되고, 또한 성실하지 않게 공시되었던 것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기적인 표시라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성실하게 한편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서 장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근거”에 관한 요건이 예상된 시점에서 장래에 관한 표시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해당 예측이 이후에 현실의 것과 다른 부정확하다는 것이 판명되더라도 회사측의 책임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공시를 SEC에 제출되는 4분기 보고서 또는 주주에게 송부되는 연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회계감독시스템

미국은 2002년 이른바 “엔론 사태” 이후 심각하게 외부회계감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arbanes - Oxley Act 2002」를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이후 미국 회계감독에 관한 중심적 법률이 되었다. 「Sarbanes - Oxley Act 2002」 제정은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 외국에 까지 영향을 미친 법률로서 강력한 규제에 의한 회계감독 강화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⁶⁹⁾ 「Sarbanes - Oxley Act 2002」의 가장 큰 특징

않고, 예측 정보의 표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는 세이프 하버 규칙을 규정하는 1933년 증권 법규칙 175의 것보다 폭넓은 것이 된다. 다만, 고의로 또는 성실한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부실한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Bespeak Caution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今川嘉文, 企業情報開示と外部監査制度の強化, 神戸学院法学 第34卷 第2号 (2004.8), pp.428~429)

69) 「Sarbanes - Oxley Act 2002」는 제1장(회계감독위원회), 제2장(감사인 독립), 제3장

중의 하나는 강력한 회계감독을 시행하기 위한 독립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른바 “상장회사 회계감독기구(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의 설립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회계감독기구 운영과 시장감독 방향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CAOB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1)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업무

「Sarbanes-Oxley Act」 Section 106(a)에서는 PCAOB가 정식으로 발족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는 PCAOB에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유가증권 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공표하지 못하며 감사보고서의 작성 또는 공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arbanes-Oxley Act」 Section 102(b)에서는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① 과거 1년 동안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유가증권 발행인의 명단, ② 연간 감사수수료, 기타 회계수수료 및 비감사서비스수수료 내역, ③ 회계법인의 최근연도 재무상황, ④ 회계 및 감사 업무수행에 대한 품질관리정책보고서, ⑤ 감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참여한 회계사의 명단, ⑥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제재 내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Sarbanes-Oxley Act」 Section 102(b)에서 PCAOB는 회계법인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등록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⁰⁾

(기업 책임), 제4장(재무사항 공시의무 강화), 제5장(재무분석가 이해충돌), 제6장(위원회 자격과 권한), 제7장(조사 및 보고), 제8장(기업 형사범죄에 대한 책임), 제9장(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제10장(법인세 환급), 제11장(법인사기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강력한 회계감독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70) 박찬호 외 3인,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7.12), p.17.

(2) 회계규정 및 기준의 제정

「Sarbanes-Oxley Act」 Section 103(a)에서는 PCAOB의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PCAOB는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 및 발부하는데 적용될 감사 등 인증기준, 품질관리기준, 윤리기준⁷¹⁾을 제정하거나 수정·변경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기준에는 ① 감사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감사조서를 7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담당 감사인이 아닌 독립된 검토자에 의한 확인 또는 제2차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③ 상장회사의 내부통제구조와 절차에 대한 감사인의 테스트 범위와 테스트 결과 발견사항,⁷²⁾ ④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중요 취약점 등에 대한 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에는 ① 회계사의 윤리 및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시규정이 포함되어있어야 하고, ② 회계 및 감사 질의에 관한 회계법인내 자문, ③ 감사업무의 감독 및 회계법인의 내부품질관리검토 등에 관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PCAOB는 감사인의

71) Sarbanes-Oxley법의 비판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매우 강력한 규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관하여 연방차원의 직접적인 규제가 실질적으로 시장효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율적인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업별 윤리기준의 운영은 매우 훌륭한 자율규제수단으로 평가받았다. Enron 사태와 같은 기업공시부실 사고는 자율규제에 대한 회의를 발생시켰다. Sarbanes-Oxley법은 다시 한번 이러한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수단을 강제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Sarah H. Duggin & Stephen M. Goldman, Restoring Trust in Corporate Directors: The Disney Standard and the New Good Faith, 56 AM. U. L. Rev. 211 (December, 2006), pp. 259-63)

72) SEC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구분하여 공시통제 및 절차라는 개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시통제 및 절차(Disclosure Controls & Processes)’란 감독기관에 제시되고 공시되는 정보가 적절한 시간 내에 보고되는 체계,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빠르게 회사의 최고경영진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공시통제 및 절차는 재무보고 내용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는 달리 공시와 정보전달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송인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투명성, 상장협연구 제53호 (2006.4), pp.75~76)

독립성에 관한 기준과 규칙도 제정하며 전문회계사단체 또는 자문단체와 협력하여 각종 기준의 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경과 등을 연차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³⁾

(3)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조사·수사·제재

「Sarbanes-Oxley Act」 Section 104(a)~104(h)에서는 PCAOB에 의한 등록회계법인의 조사 및 제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서 PCAOB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인과 관련하여 등록회계법인과 그 관계자의 위법 및 관련 규칙의 준수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는 ① 감사기업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② 100개 이하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마다 실시하되, PCAOB 규칙에 따라 감사주기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Sarbanes-Oxley Act」⁷⁴⁾ Section 104에 의하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는 필요에 따라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와 회계법인의 고객 등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감사작업서류 등의

73) 박찬호, 앞의 책, p.19.

74) 미국의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SEC Rule을 근간으로 체계적인 공시체제를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규칙과 법령들은 판례법에 이론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Sarbanes-Oxley법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판례법 등을 배경으로 입법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판례법상의 법리와 취지를 연방차원의 입법을 통하여 규정하였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판례법상의 이사책임에 관한 원칙을 실정법화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isa M. Fairfax, Spare the Rod, Spoil the Director? Revitalizing Directors' Fiduciary Duty through Legal Liability, 42 HOUS. L. REV. 393 (Summer, 2005), pp.399-405);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기업공시제도와 연동하여 판례법을 형성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인의무가 공시의무로 연결되어 기업경영자 측면에서 공시의무 이행에 관한 법적 의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Nicole M. Kim, *Malone v. Brincat; The Fiduciary Disclosure Duty of Corporate Directors under Delaware Law*, 74 Wash. L. Rev. 1151 (October, 1999), pp. 1170-72); 또한, 미국의 회사법과 판례법에서는 공정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중시하고 있으며, 완전 공시(full disclosure)의 정도에 따라서 공정성 여부의 추정이 좌우되며, 이사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였는지의 여부가 주의의무 위반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NOTE, *The Propriety of Judicial Deference to Corporate Boards of Director*, 96 HARV. L. REV. 1894 (June, 1983), pp. 1894-1903)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SEC에 소환장의 발부도 요청할 수 있고, 조사의 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등록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임직원의 정직 또는 면직, 회계법인 등의 일정행위의 일시 또는 영구적 제한 또는 특정인 고용요구, 견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고 민사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⁵⁾

II. 일 본

1. 공시 및 회계 관련 법제 개요

일본의 회계 및 공시관련 법제는 투자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인 금융상품거래법을 기초로 한 공시 및 회계관련 규정과 기업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다고 있는 회사법상의 회계규정 그리고 세무신고 목적의 법인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사법상의 회계규정은 분배가능잉여금을 위한 계산중심으로 채권자보호가 주된 목적인 반면에, 금융상품거래법은 시장기능의 효율성 확보, 금융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공시기능 담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와 대회사 중심의 회계감독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⁷⁶⁾

일본 회사법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하여, 주식회사는 매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기타 회사의 재산과 손익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와 사업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본 회사법 제435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감사역 또는 감사위원회와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고, 사업보고서 및 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수행하며, 감사받은 재무제표 등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 제436조)⁷⁷⁾

75) 박찬호, 앞의 책, pp.20~21.

76) 노희진 외 7인, 우리나라 회계 관련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8.3), p.90.

77) 정태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이행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일본의 전반적인 공시제도는 상법상의 공시제도와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공시제도로 나누어져 왔었는데, 상법상의 공시제도는 기업의 활동과 그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주주,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능을 하였고,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제도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대별되며, 정기공시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와 반기보고서로, 수시공시는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로 이루어졌었다.⁷⁸⁾

한편으로 일본은 아직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도입에 있어서 명시적인 입장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일본은 이미 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동향을 파악하여 일본 기업회계기준을 변화시켜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공식적인 도입 입장을 공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일본에서는 2008년 3월 10일에 일본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10호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침 제19호」, 「금융상품의 시가 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 지침」이 공표되었다. 이 개정에 의하여 종래, 유가증권 등 일부의 금융상품으로 한정되었던 시가 정보의 공시 대상은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체제의 기재에 대해서도 종래에는 금융 파생상품에 관한 부분에만 한정되었지만, 금융상품 전반에 대해서 인식되는 중요한 리스크의 기재가 요구되는 등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무정보의 충실이 도모되고 있다. 이 개정은 금융거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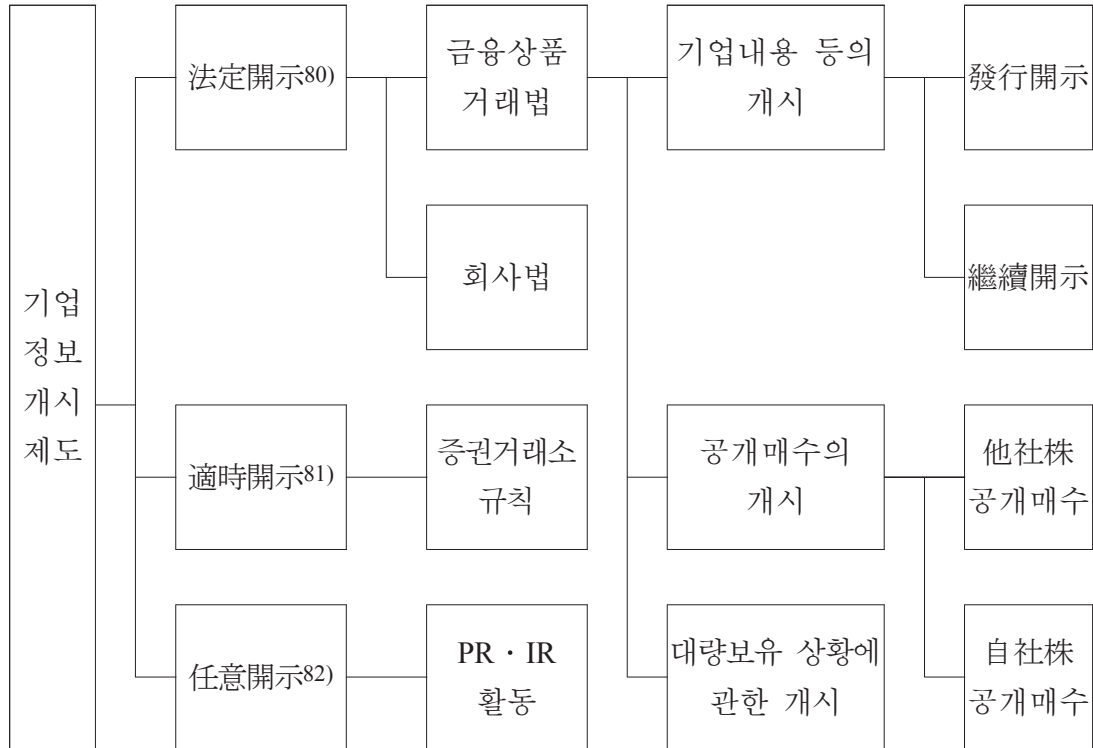
제4호 (2010.12), p.129.

78) 정태범, 앞의 글, p.130.

하는 가운데, 금융상품의 시가 정보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고, 동시에,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수용 및 수렴의 일환으로서도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3가지의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즉, ① 금융상품에 대한 방침으로서 자산운용 방침이나 자금조달 방침, 그 수단 등을 기재하고, ② 금융상품의 내용 및 리스크에 관하여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내용, 그 리스크를 설명하며, ③ 금융상품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체제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방침, 리스크 관리 규정 및 관리 부서의 상황, 리스크의 감쇄 방법 또는 측정 절차 등을 설명하며, 2007년 일본 증권거래법의 개정형식을 가진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상장회사 공시에 관한 몇 가지 개선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① 유가증권보고서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 ② 내부통제보고서의 제출, ③ 분기보고서 제도의 도입 등이며, “유가증권보고서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은 기존에 임의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서의 작성제출 주체는 대표자가 아니고 발행회사 자신이 되며 “내부통제보고서의 제출”은 유가증권보고서에 관한 확인의 전제가 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경영자가 평가한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당해 보고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의무를 부여한 것이며, “분기보고서 제도의 도입”은 기존에 거래소의 자율규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기보고를 법제화하여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의무화한 것이다.⁷⁹⁾

79) 정태법, 앞의 글, p.130.

<표 2-5> 일본의 기업정보개시제도 체계



※ 출처: 이승환,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국가별 기업공시제도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10.18.), p.46.

80) 법정개시는 주로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회사법에서는 주주나 채권자를 대상으로 계산서류의 비치·결산공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을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유가증권보고서 등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공중에게 열람토록 함으로서 이루어진다.

81) 적시개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요한 회사의 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투자자에 대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개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개시제도이다. 이러한 적시개시는 주로 결산에 관한 단신(信等) 등으로 증권거래소나 일본증권업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82) 임의개시는 금융상품거래법이나 회사법에서 정한 정보개시와 함께 기업이 임의적으로 투자판단에 유용한 기업정보를 주주나 투자자에 대하여 적시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애널리스트의 설명회, 일반대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미지 광고활동 등도 임의개시에 해당한다.

일본은 금융청에서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하여 제출된 공개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조사를 수행하며, 증권거래 등에 관하여 감시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보고서상 재무사항의 허위기재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일본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하여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및 일본공인회계사협회(Japanese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JICPA)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공익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및 감사법인에게 관련 자료를 보고 및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인회계사 및 감사법인에 대한 현장검사권한, 감사법인에 대한 행정조치권한, JICPA에 대한 업무개선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다.⁸³⁾

2.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일본은 2001년에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민간 경제관련 10개 단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서 독립된 민간의 회계기준제정기관으로 재단법인 재무회계기준기구(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oundation)를 설립했으며, 이 재단이 수행하는 역할은 첫째, 일본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ASBJ)가 새로운 회계기준의 제정기관으로 IASB와 적절히 연계하면서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실무계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한 실무상의 회계처리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⁸⁴⁾ ASBJ는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따라 다음과 같은 3종류의 회계기준 등을 제정·공표한다. 즉, 기업회계기준(회계처리 및 공시의 기본이 되는 기준), 기업회계기준 적용지침(기준의 해석이나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의 지침) 및 실무대응지침(기준이 없는 분야에 대한 임

83) 노회진 외 7인, 앞의 책, pp.95~96.

84) 황운경,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기업법제의 변화 : 각국의 기업회계제도의 비교 적 고찰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4권 제1호 (2012), pp.29~30.

시적인 처리, 긴급을 요하는 분야에 대한 실무상의 처리) 등이다.⁸⁵⁾

현재 일본은 공공부문인 기업회계심의회와 민간부문인 ASBJ가 병존하여 서로 제휴하면서 회계기준의 제정에 함께 참여하는 이중적인 구조 하에 있으며, ASBJ가 공표하는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침 및 실무대응보고는 기업회계심의회가 공표한 의견서 등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으로서의 지위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단독의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청에서 공표되는 기준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미국의 SEC가 FASB에 회계기준의 제정권한을 실질적 및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금융청은 ASBJ가 제정한 회계기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⁸⁶⁾

3. 발행시장 공시제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발생시장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을 모집⁸⁷⁾하거나 매각⁸⁸⁾할 때 행하여지는 것으로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발행자는 유가증권신고서, 投資信託説明書(目論見書) 등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모집·매각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제4조), 이러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일반공중이 이들 제출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 이루어진다.⁸⁹⁾

85) 황운경, 앞의 글, p.30.

86) 황운경, 앞의 글, p.30.

87) 동법에서의 「모집」이란 새로이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권유를 50명 이상의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3항).

88) 동법에서의 「매출」이란 모집과 달리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으로서 현재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중에게 일시에 대량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그 매출가격·매출기간등의 조건이 동일하고, 50명 이상의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4항).

89) 이승환,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국가별 기업공시제도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이러한 일본의 발행시장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시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사업설명서, 유가증권통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⁹⁰⁾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면서 투자신탁설명서⁹¹⁾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절차에 있어서 금융상품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각에 관한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다만 신고서류의 내용이 공중에게 용이하게 이해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신고자인 발행회사의 기업정보가 이미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에 달하지 않는 기간(실무상으로는 대략 7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 제3항).

일본의 경우는 발행시장 공시제도에서 특징적인 발행등록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는 발행등록서를 미리 제출하면 실제 발행시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발행조건 등 증권정보만을 기재한 발행등록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즉시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참조방식의 이용적격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적용되며, 대상증권에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로 회사채나 CP발행시 이용되고, 발행예정기간은 발행등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며, 공모금액이 10억 엔 미만인 소액의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국채증

자료집 (2013.10.18.), p.46.

90) 김문현·정윤모·손영락·김란영, 한·미·일 공시제도의 현황 및 비교, 한국증권연구원 (2001.7), pp.148~149.

91) 투자신탁설명서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각을 위해 사용되는 권유문서로서(제2조 제10항), 발행금액의 총액이 1억엔 이상의 모집,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매각총액이 1억엔 이상인 매각 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발행자나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미리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동시에 작성되어 교부되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중요한 내용 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승환, 앞의 글, p.49)

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신고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⁹²⁾

발행시장 공시제도에서 필요한 사업설명서의 경우, 일본은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일반인에게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려면 발행인은 사업설명서를 미리 또는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⁹³⁾

일본의 경우, 허위공시를 시정하는 행정절차와 허위의 정보공시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책임제도에 의해 발행공시에서의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은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관해 신고서류에 허위기재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발행등록서에 관해서도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제출명령, 효력정지명령이나 효력정지·효력발생연기처분이 인정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는 유가증권신고서, 발행등록서 또는 그 첨부서류 등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 자는 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발행공시에서의 공시의무위반에 관하여 손해를 받은 자의 구제와 위반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요건이나 효과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수정을 한 민사책임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⁹⁴⁾

4. 유통시장 공시제도

일본에서는 유통시장 공시를 “계속개시”라고 하는데, 계속개시는 유통성을 가지는 유가증권(상장유가증권)이나 모집·매각의 신고를 한

92) 김문현·정윤모·손영락·김란영, 앞의 책, pp.151~152.

93) 김문현·정윤모·손영락·김란영, 앞의 책, p.155.

94) 김문현·정윤모·손영락·김란영, 앞의 책, pp.76~77.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발행자는 정기적으로 내각총리대신에게 유가증권보고서, 4반기보고서(四半期報告書), 임시보고서(臨時報告書) 등을 제출하여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⁹⁵⁾

즉, 일본의 유통시장 공시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형태의 정기공시, 수시공시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정기공시에 제출되어야 할 공시내용으로서 연차보고서, 반·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시공시의 경우는 임시보고서와 거래소의 적시공시로 구분되는 일본의 수시공시에서는 법에서 정한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의 보고서처럼 임시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 공시감독에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⁹⁶⁾

일본의 수시공시제도에서 임시보고서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수시공시 사항 중 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건 즉,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거래소를 통한 적시공시 대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특수공시제도와 취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⁹⁷⁾

유통시장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 예방목적으로 개선보고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시공시가 거래소 중심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불성실공시는 상장폐지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포괄적 사기방지를 위한 조항에 따라 불성실공시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⁹⁸⁾

95) 이승환, 앞의 글, p.50.

96) 김문현·정윤모·손영락·김란영, 앞의 책, p.158.

97) 김문현·정윤모·손영락·김란영, 앞의 책, pp.161~162.

98) 김문현·정윤모·손영락·김란영, 앞의 책, pp.164~165.

한편으로, 유통시장 공시제도에 중시되는 분기보고제도에 관하여 일본의 분기보고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⁹⁹⁾ 일본은 시장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증권거래소 및 일본 증권업협회는 상장회사 및 장외 등록 회사에 2004년(평성16년4월)에 공시하는 사업년도부터, “4분기 재무·업적의 현황”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종래 4분기 공시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더즈시장”에서의 4분기 공시 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의 4분기 재무 정보는 증권거래법상의 법정 공시제도는 아니지만, 증권거래소 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써 증권거래소 시장의 적시 공시 제도를 확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분기 재무·업적의 현황”에서는 ① 경영성적의 진척 상황으로서 매상고, 영업 손익, 경상 손익, 4분기(당기) 순손익 등의 수치, 경영 성적의 진행 상황을 문장으로 설명, ② 재정상태의 변동 상황으로서 총자산, 주주 자본 등의 수치, 재정상태의 변동 상황을 문장으로 설명, ③ 현금흐름의 상황으로서 영업 활동·투자 활동·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④ 업적 예측 등을 기재한다. 첨부자료로서 요약(연결) 대차대조표 및 요약(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연결현금흐름계산서¹⁰⁰⁾가 추가된다. 4분기 재무 정보는 중간(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신속성을 중시하고 상장회사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간편한 방법에 의

99) 今川嘉文, 企業情報開示と外部監査制度の強化, 神戸学院法学 第34卷 第2号 (2004.8), pp.431~432.

100) 공시 항목으로서 요약(연결) 대차 대조표에서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순연자산, 고정부채 및 자본 등이 있다. 한편, 요약(연결) 손익계산서로는, 총매상고, 매상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세금공제 이전 4분기(당기) 순손익, 4분기(해당) 순손익 등이 있다. 매상고와 관계된 사업별 또는 지역별의 segment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가가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이론가격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시가평가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 전체의 공시가 지연되는 등의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시가평가를 생략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今川嘉文, 앞의 글, pp.431~432)

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결 작성 회사는 연결 베이스로 작성하고, 계열사 전체를 기초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다.¹⁰¹⁾

5. 회계감독시스템

일본은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uditing Oversight Board, CPAAOB)」를 중심으로 회계감독시스템과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운영된다. 일본의 회계감독기관인 CPAAOB는 미국에서 발생한 기업회계부정사건인 엔론사태 이후에 회계감독의 필요성으로 제정된 「Sarbanes-Oxley Act」에 근거하여 새로운 회계감독기관으로 설립된 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를 모델로 설립되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의 경우는 새로운 입법에 근거하여 감독기관이 설립된 반면, 일본의 경우는 기존에 운영되었던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여 설립되었다는 점과 기존의 금융감독기

101) 4분기 공시 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연도결산 및 중간결산에 대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4분기 결산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표의무를 부담한다. 연결 월차 예산 실적 관리가 종래, 행해지지 않았던 이유로서 ① 모 회사의 사업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자회사 등에 개별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제출시키는 것만으로 기업집단의 관리상 지장이 없었다는 점, ② 단체 중시의 풍토 속에서 경영관리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월차(月次)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는 의식이 경영자에 있어서 희박하였다고 하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연결 월차 결산에는 다음의 이점이 있다. ① 사업별, 국가별, 지역별의 판매 동향, 그룹 전체의 경영 정보를 다각적으로, 신속히 분석하는 것으로 수익력을 높여 정확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② 투자가용 홍보(IR) 활동을 강화하고, 결산 발표수치가 적은 시기라도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주주 중시의 태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영상황이 나쁜 자회사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연결 월차 결산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룹 회사가 입력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사의 호스트 컴퓨터로 수집하고, 사업부별, 지역별, 제품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집계하게 된다. 또한 주요 제품의 품종별 손익 상황, ROE 등을 산출할 수 있다. 경영자의 경영 활동의 성과는 연결 베이스의 업적으로 시장 평가되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연결 그룹 전체의 경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은, 경영자에 있어 불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다각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해당 정보는 경영 자원의 최적 배분에 기여하게 된다. (今川嘉文, 앞의 글, pp.431~432)

관의 산하 조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즉, CPAAOB는 2003년의 일본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근거로 공인회계사시험실시 및 공인회계사 등의 감독을 위하여 일본 금융청에 설치되었다.

CPAAOB의 주요 권한은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하여 수행된 품질관리 Review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이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품질관리 Review에 대한 심사는 “감사의 품질확보와 실효성의 향상에 대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 및 “감사업무의 계속감시와 품질관리 Review 기능향상”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¹⁰²⁾

CPAAOB는 품질관리 Review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 결과, ①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에 있어서 중요한 Review절차가 흠결되어 있고 또는 그 실시가 충분하지 않는 등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가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를 통하여 감사사무소의 감사업무가 적절히 행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에서 지적된 사항이 적절하게 감사업무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④ 감사사무소의 업무관리체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⑤ 피감사회사의 내부관리체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감사사무소의 감사업무 실시상황을 피감사회사 측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법령기준 등의 준수상황을 횡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⑧ 상기 외에 개개 심사의 결과 개별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인회계사협회의 적절한 운영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협회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102) 박찬호 외 3인,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7.12), pp.37~38.

공익상의 이유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감사법인과 감사법인의 업무에 관계가 있는 장소(피감사회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CPAAOB의 심의를 거쳐서 검사대상인 공인회계사협회 또는 감사법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지한다.¹⁰³⁾

6. 공시규제의 실효성 확보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에는 ①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와 ② 기재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등이 흠결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에 유가증권신고서의 신고자는 그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 경우의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한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자인 투자자가 그 유가증권의 취득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의 시장가액 또는 손해배상 전에 그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허위기재에 책임있는 발행회사와 임원, 공인회계사 등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7조 내지 제21조의2).¹⁰⁴⁾

한편, 금융상품거래법에서도 공시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된 연결재무제표 등의 개시 정보에 대하여는 감사법인 등의 독립감사인이 행하는 감사를 필요로 하며, 유가증권보고서등에 중요한 허위기재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감시위원회가 개시내용의 감사·과징금 조사를 하고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자율적 규제기관인 일본공인회계사협회가 품질관리 리

103) 박찬호 외 3인, 앞의 책, pp.40.

104) 이승환, 앞의 글, p.53.

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융청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가 그 품질 관리 리뷰 및 감사법인 등을 검사하여 감사법인의 품질관리체제 등을 검사하게 하고 있다.¹⁰⁵⁾

<표 2-6> 허위기재의 배상범위

대상자	책임대상범위	배상책임
발행회사	유가증권신고서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과실책임 ○ 면책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손해배상액이 법정되어 있음
발행회사의 임원	유가증권신고서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과실책임(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을 지는 자가 부담) ○ 청구자(투자자)가 인과관계를 입증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재무제표 부분	
증권회사	재무제표 이외	

※ 출처 : 이승환,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국가별 기업공시제도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10.18.), p.53.

<표 2-7> 개시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위반내용			형 별	課徴金
유가증권 신고서	허위 기재	중요한 사 항에 대한 허위기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7억엔 이하의 벌금)	172条
	不提出	제출안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

105) 이승환, 앞의 글, p.63.

제 2 장 자본시장 공시제도 개관과 글로벌 변화

위반내용			형 별	課徴金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중요한 사 항에 대한 허위기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인은 7억엔 이하의 벌금)	172条 의2
	不提出	제출안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
반기 보고서	허위 기재	중요한 사 항에 대한 허위기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172条 의2②
	不提出	제출안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인은 1억엔 이하의 벌금)	-
임시 보고서	허위 기재	중요한 사 항에 대한 허위기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172条 의2②
	不提出	제출안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인은 1억엔 이하의 벌금)	-
4반기 보고서	허위 기재	중요한 사 항에 대한 허위기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172条 의2②
	不提出	제출안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인은 1억엔 이하의 벌금)	-

위반내용			형 별	課徵金
내부통제 보고서	허위 기재	중요한 사 항에 대한 허위기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 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
	不提出	제출안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 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
경영자 확인서	不提出	제출안함	30만엔 이하 또는 10만엔 이 하의 過料	-
공개매수 신고서등	허위 기재	중요한 사 항에 대한 허위기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7억엔 이하의 벌금)	-
	不提出	제출안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 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
대량보유 보고서등	허위 기재	중요한 사 항에 대한 허위기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 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
	不提出	제출안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법 인은 5억엔 이하의 벌금)	-

※ 출처: 이승환,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국가별 기업공시제도 현황” 한국법
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10.18.), pp.63~65.

Ⅲ. 영 국

1. 공시 및 회계제도 현황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회사의 계산과 회계처리는 법에서 규율하
기보다는 시장이나 전문직업인의 의견에 따라서 기업회계처리가 수행

되어진 것이 전통이었으나, EU 제4지침(Fourth Company Law Directive on the annual accounts of certain types of companies)과 제7지침(Seventh Company Law Directive on consolidated or group account)의 채택으로 인하여 법에서 회계처리근거와 방법 및 서식을 규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전환하였다.¹⁰⁶⁾ 이에 따라 회사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관련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 회사법의 제개정권한을 가지는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회사법 제256조에 기초하여 재무보고심의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의 산하조직에게 회계기준 제정권을 위탁하여 기준제정 작업을 수행한다.¹⁰⁷⁾

2. 공시 및 회계관련 법제

영국의 공시관련 법제는 1985년 회사법과 2000년에 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으로 구성되며, 1985년 회사법은 넓게 일반적인 공시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공모발행된 증권권의 경우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법상의 공시대상 정보는 영국 통상산업부 관할의 행정기관인 회사등기소(Companies Registrar at Companies House))에 등록이 강제된다.¹⁰⁸⁾ 회사법상 공시해야할 대상 정보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정보, 이사보고서, 이사보수보고서(공개회사에 한함),¹⁰⁹⁾ 감사보고서 등이며, 이들 정보 역시 회사등기소에 송부해야 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금융서비스시장법상의 공시대상은 금융

106) 노희진 외 7인, 우리나라 회계 관련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8.3), pp.105~106.

107) 노희진 외 7인, 앞의 책, pp.106~107.

108) 노희진 외 7인, 앞의 책, p.128.

109) 보수에 관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의 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의 지위와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자로서의 지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의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Aparna Viswanathan, From Corporate Governance To Social Enterprise: An Analysis of the Companies (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2004, International Company And Commercial Law Review, 2005, 16(4), pp. 157-161)

서비스시장법상 공모발행된 증권의 경우 상장명세서(listing particular)에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기대되는 모든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부과된다.¹¹⁰⁾

3. 발행시장 공시제도

영국은 증권거래소인 LSE(London Stock Exchange)를 중심으로 기업의 상장과 투자자의 거래 및 기업공시가 이루어진다. LSE는 EU의 관련 지침에 의한 통제를 받음과 동시에 영국 상장감독청인 UKLA(UK Listing Authority)에 의한 상장규제와 영국 금융감독청인 FSA(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UKL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및 UKLA가 신청인에게 명백하게 고지한 특별조건에 따라 상장을 허가할 수 있는데, 상장신청인은 즉. 발행회사는 완전한 법인체이거나 회사설립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이고 정관이나 내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① 최소 3년간의 회계보고서(신규상장신청인인 경우, 특별상장일전 6개월이상의 회계보고서), ②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회사와 관계회사의 연결회계보고서, ③ 신청회사의 국내법, 영국의 회계기준, 미국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보고서, ④ 영국, 미국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 ⑤ 신규상장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없이 감사인에 의해 공표된 회계보고서의 요건을 갖추고 외부회계감사를 경유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① 신청인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경우, ② 투자자가 상장을 추진하는 유가증권이나 신청인과 관련한 비공식적 판단에 접근할 필요한 정보를 가지는 경우, ③ 신청서가 보증사채와 관련된 경우이며 보증인이 최소 3년이상 감사회계보고서를

110) 노희진 외 7인, 앞의 책, p.129.

작성한 경우, ④ 신청서가 사채와 관련된 경우인데 그 사채와 관련한 의무사항이 완전보장된 경우에는 3년 미만의 회계보고서를 인정하고 있다.¹¹¹⁾ 또한, 상장신청인은 회계감사인이 신청인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그들의 조직체에 의해 발행된 독립성에 대한 준칙을 따른다는 서면확인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¹¹²⁾

상장신청이 유지되는 요건으로서 상장신청회사는 자신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주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과거 매출액기록에 의해 유지되는 독립사업체이어야 하고, 그 주요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독립사업체이어야 하며, 최소 3년간 요구되는 회계보고서 제출기간의 사항을 유지해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사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UKLA가 상장신청인과 투자자이익을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투자자가 신청인 및 상장을 추진하는 유가증권과 관련한 비공식적 판단에 접근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장을 허용할 수 있다.¹¹³⁾

4. 유통시장 공시제도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년)과 금융감독원의 상장규정,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공시기준에 따라 행해진다. 수시공시는 금융감독원의 영국 상장국(United Kingdom Listing Authority, UKLA)과 런던증권거래소(LSE)의 기업공시실(Company Announcement Office, CAO)와 관련을 갖게 되어 있으며, 런던증권거래소는 이 정보를 1차 정보제공업체(Primary Information Provider, PIP)에서 2차 정보제공업체(Secondary

111) 정석우·신현결·임태균·권성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상장·공시제도 정비방안, 한국거래소 (2009.11), pp.183~184.

112) 정석우·신현결·임태균·권성수, 앞의 책, p.184.

113) 정석우·신현결·임태균·권성수, 앞의 책, p.185.

Information Provider, SIP)에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배포한다.¹¹⁴⁾

역사가 가장 오래된 런던증권거래소는 주가에 상당한 변동을 초래하는 주가민감정보(Price Sensitive Information)에 대해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단지 공시여부를 상장회사가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시규정내에 일반공시의무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정규정보서비스(RIS)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¹¹⁵⁾ 그 내용은 중요성 판단기준으로서 주가에 상당한 변동을 야기하거나 채무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공개되지 않은 모든 관련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여건이나 사업실적, 실적에 대한 회사의 기대 등으로 구분하여 사실정보는 물론 예측정보로서 실적치와 차이가 심한 경우에도 공시하게 되어있고, 특히 해외증권거래소에 증권이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equivalent information)를 국내외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통지하여야 한다.¹¹⁶⁾

5.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유치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조기도입국가에 해당한다. 유로존 국가들이 상당수 도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2005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중심 회계방식과 연결중심 재무제표 등을 이미 자본시장에서 기업공시를 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해 왔으며, 기존의 영국회계기준이었던

114) 윤계섭, 수시공시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경영논집 제36권 제2·3호 (2002.9), p.484.

115) 윤계섭, 앞의 글, p.492.

116) 윤계섭, 앞의 글, p.492.

UK-GAAP(UK-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과의 충돌 문제 등을 오래전부터 해결해 왔다. 또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2005년 도입과 2007년 확대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에 영국 회사법의 많은 개정과 보완이 있었는데, 이러한 개정작업 과정에서 영국의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을 대비한 많은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상당하게 제공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도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당시에 중요하게 이슈가 되었던 사항으로서, 현재 이미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제도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영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슈

항 목	내 용
회계정책	기준서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공시를 위한 회계정책 문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판 단	경영자의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과 관련된 공시는 종종 허술하며 정보가치가 없다. (IFRS는 판단과 불확실에 대한 주요 추정영역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 일부 기업은 판단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영업권	많은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IFRS에서 요구하는 영업권의 증가요인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	발표되었으나 아직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기업의 영향에 대해 모든 기업들이 검토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들	IFRS를 적용할 때는 영국 GAAP을 적용할 때보다 더 광범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시목적 상 주요 경영진이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

항 목	내 용
기타공시사항	공시사항에 대한 심각하지 않은 다양한 기재 생략에 대해 권고가 이루어졌다.

※ 참조: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사례와 시사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10.1), p.4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있어서 조기도입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입과정의 시행착오와 고민의 성과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즉, 영국은 IFRS 전환과정은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최초 IFRS 재무제표(상장회사는 분·반기 재무제표)가 작성될 때, 전년도의 IFRS 비교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어서, 전환과정은 IFRS 채택이 의무화되기 1년 전에는 시작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장이었다.¹¹⁷⁾ 영국과 기타 EU회원국들도 EU에 IFRS 도입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동 절차를 거칠지 여부가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결정되지 않아 도입에 방해가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인증절차가 확정된 후, 기존 기준서 및 계류중인 기준서들의 승인이 요구되었으며, 관련당국에 의해 적용 예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¹¹⁸⁾

5. 회계감독시스템

영국은 회계감독시스템에 있어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징적이고 개별적인 회계감독법률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회사법 체제 내에서 회계감독시스

117)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사례와 시사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10.1), p.42.

118) 금융감독원, 앞의 책, p.42.

템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 국제회계시장에 경종을 울렸던 미국의 엔론사태와 2005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중요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에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자본시장 변화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회사법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상황을 극복한 특징이 있다. 다만,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회사법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법제도 보완이라고 할 것이다. 즉, 영국은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1984년 Company Act와 1989년 Company Act를 개정한 2004년 Companies (Audit, Investigation and Community Enterprise) Act를 제정함으로써, 동법률에 의하여 회계감독의 독립성 확보, 회계감사절차에 있어서 보고 이행 및 감사인의 정보접근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이루어졌다.

상장회사는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이 정한 상장명세서에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되고, 이 경우 허위로 작성할 경우 상장폐지 등 FSA의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시장남용행위가 되어 FSA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상장회사의 회계기준 준수관련 업무는 FSA내에 설치된 상장심사기관인 UKLA(UK Listing Authority))에서 수행하고 있다.¹¹⁹⁾

회사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의 위임을 받아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산하 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FRRP)에서는 기업회계의 회사법규 및 회계기준 준수여부를 심사하는데,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¹²⁰⁾ 있는

119) 노회진 외 7인, 앞의 책, p.117.

120) 기업공시제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신뢰”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다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기업공시제도에 있어서 회계신뢰와 대응될 수 있는 법적인 신뢰개념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경영진과의 관계인 신인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신인관계는 수탁자와 신탁자라는 법적 개념을 통하여 형성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양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신뢰” 개념이다. 신인관계상 나타나는 신인의무는 바로 이러한 “신뢰”의 유지와 보호를 법적인 의무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신뢰관계가 단절되어질 때에 발생되어지는 손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제재가 합리적으로 가지고 제도적으로 유지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심사하며 심사결과 회계기준 및 공시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 해당회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벌목적보다 자율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회사가 자발적 정정을 거부할 경우 FRRP는 법원에 정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¹⁾

상기한 바와 같이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에 의한 회계감독이 이루어지는데 FRC의 주요 기능은 ①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과 이행, ② 상장회사 및 공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감사의 감독, ③ 공적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예산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독업무에 대한 경제적인 자율성을 확립하고 있다.¹²²⁾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근간으로 FRC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즉, 기업보고와 지배구조의 신뢰를 촉진시키기 위해 FRC가 하는 기능으로서 ① 높은 수준의 기업 지배구조 촉진, ②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 감독, 시행, ③ 보험계리 기준의 제정, ④ 감사인에 대한 규율과 감독, 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회계 보험계리 계획의 수행과 독립적인 감사의 수행, ⑥ 전문 회계, 보험계리인 단체의 규율활동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며, FRC의 규율대상인 “회사”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주로 상장법인 및 회사법에 의해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고, 또한 연금 기금이나 공공복지기구들로서 대부분 공적 기관과 비영리기구를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partnership)과 같은 회사가 아닌 단체 중에 어떠한 것은 FRC의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¹²³⁾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법적인 영역의 신인의무는 이러한 설명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신인의무는 자기구속적 성격이 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Lawrence E. Mitchell, *The Importance of Being Trusted*, 81 B. U. L. REV. 591 (2001), pp. 614-15)

121) 노희진 외 7인, 앞의 책, pp.118~119.

122) 박찬호 외 3인,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7.12), pp.21~22.

123) 박찬호 외 3인, 앞의 책, p.28.

FRC산하 FRRP는 상근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기업, 회계사, 변호사 등 여타의 비상임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 심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심사대상은 기업지배구조, 평판, 이해도, 회계이슈, 공시, 기업특수요인 등에 기초한 리스크 평가방식(risk based assessment)을 통해 선정하는 선제적 접근방식(pro-active basis)을 채택하고 있고, 이 외에도 민원이나 유관기관 등을 통해 분식혐의가 제보된 회사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며, 주요심사대상 보고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연간 재무제표로서 2006년 4월부터는 회사법에 의한 영업 및 재무검토보고서(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OFR)에 대한 심사를 추가하고 있다.¹²⁴⁾

최근의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에 의한 주목할만한 활동은 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도입을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2013년 3월 14일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는 현행 UK-GAAP을 대신하는 것으로, IFRS을 기초로 한 기준인 “영국 및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적용되는 재무 보고 기준 (FRS102)”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공표하였다. FRS102는 201년 11월에 공표된 FRS100(재무보고규정의 적용) 및 FRS101(공개감면에 관한 구조)와 함께 영국의 새로운 회계공시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담당하는 회계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보험회사에 대한 전문적 규칙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향후에 공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다른 국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마찬가지로 조기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현행 UK-GAAP 적용기업은 EU에 의하여 공표된 IFRS (공개감면을 규정한 FRS101 포함)와 FRS102 회계에 관한 기본구조 중

124)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인 회계사회 (2010.5), p.51.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되었다. FRS102는 IFRS를 기초로 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 작성의 간소화에 관한 관점에서 EU에서 공표한 IFRS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새로운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기업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모회사 및 자회사에게 있어서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공개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 내용에서는 현금흐름 계산서의 공개 지원, 그룹의 주식 및 보수에 관한 거래와 금융 상품에 관한 특정 항목의 공개 감면이 포함되고 있다.¹²⁵⁾

125) KPMG, Business Alert, Global Japanese Practice Vol 113, March, 2013

제 3 장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제 1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

I. 개 요

1. 제도개선 쟁점

기업공시제도는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자사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¹²⁶⁾

이러한 기업공시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공시의 체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이전에는 미국 중심의 “US-GAAP”이 국제자본시장 기업회계기준의 표준이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동향으로 현재 국제회계기준 이른바 IFRS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도록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도입하여 제도 정착화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중심 재무제표의 작성”과 “경제적 가치의 공정가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 두가지는 기존에 적용되어 왔던 “US-GAAP”과는 매우 다른 내용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연결재무제표와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및 변화를 추

126) http://www.krx.co.kr/m7/m7_3/m7_3_1/m7_3_1_1/UHPKOR07003_01_01_01.html

진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아직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 및 분석은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많은 제도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운영하면서 과거 기업회계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중심이라는 국제회계기준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규정중심 기업회계를 운영하여 왔던 우리나라는 많은 제도적 애로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공시와 관련하여 지배회사·종속회사의 문제 등이 있는데, 이는 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회계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감독당국의 노력으로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으로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기업상장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의 상관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상은 발행시장 공시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며, 회계공시 투명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장관련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내용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작성·제출해야 할 재무제표와 이를 작성하는 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이라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는 검토와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대표적인 특징인 공정가치평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낯설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엄밀하게 표현하면 공정가치평가의 도입이 아니라 적용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공정

가치평가는 회계업무에 있어서 평가방식의 하나로서 인정받아 시행되어온 방식인데, 과거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공정가치평가의 적용범위가 매우 확대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평가가 개별 기준서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었는데, 적용확대로 인하여 그 적용범위와 분포가 매우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별도의 기준서를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가치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기존 기업회계기준과의 충돌과 혼란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중에서 아직 도입이 부담스러운 사항들은 아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면적인 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사전공시제도와 사전질의제도¹²⁷⁾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27) 사전질의제도는 감독당국의 회계감독정책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제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범위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사전질의제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사전질의제도 시행에 있어서 몇가지 우려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즉, 회계전문가들은 사전질의회신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IFRS의 제정권한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운용과 관련하여 기업과 감사인의 재량판단을 중시하며, 개별적인 질의회신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이 국제회계기준의 운용에 대해서 질의회신이라는 절차를 통해 특정회계처리 방향에 힘을 실어준다면, 새로운 회계처리의 Rule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질의회신제도로 말미암아 원칙중심 회계원칙이라는 IFRS 본연의 특징이 훼손되고 IFRS의 principle과 concept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회계처리방식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으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관이 질의회신의 형태를 통해 회계기준의 제정과 운영에 개입할 경우 우리나라가 IFRS full adoption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

2. 전문가적 판단의 고려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회계처리 담당자 또는 감사인 등에게 고도의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전문가적 판단이라 함은 회계처리의 지침과 관련된 판단, 즉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회계상의 판단이라는 것은 회계기준의 구조 내에서 관련된 사실이나 환경에 근거하여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 경험 및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고, 그 판단은 지식, 경험 및 객관성을 가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며, 그 판단의 차이는 어느 판단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판단이 옳바르다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¹²⁸⁾ 이러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전문가적 판단은 다음 도표¹²⁹⁾의 내용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표 3-1> 전문가적 판단 영역

항 목	내 용
회계기준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의 선택은 고도로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특정 항목에 고도의 판단이 요구된다) - 파생상품(derivative)의 정의에 있어서 특정 파생상품은 기준의 범위 외이다. 이러한 기술의 경우, 계약이 회계기준의 정의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인회계사, 2010.5)

128) 五十嵐則夫・町田祥弘, IFRSの下での財務諸表監査の課題, 「企業情報開示システムの最適設計」 第4編 IFRS導入と監査のあり方,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1-J-016 (2011.3), pp.5~6.

129) 五十嵐則夫・町田祥弘, 앞의 책, p.6.

항 목	내 용
	결정하며, 그리고, 계약이 범위 외에서 한정적 적용이 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계약 조항에 의해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회계기준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준의 적용 단계에서의 판단 과제가 있다. - 예를 들면, 해지의 유효성 테스트, 공정가치평가의 모델과 인풋의 적절성 판단 - 회계기준의 표현 속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 (substantially all)”, “일반적으로(generally)”의 용어 등은 판단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기준의 부재	- 현실의 거래·사상에 대한 적절한 회계기준이 없다. 판단이 요구된다.
재무제표의 표시	- 회계처리 등의 적절한 공시 방법이 주관적 측면을 갖으며, 여기에는 판단이 요구된다.
회계상의 견적	- 대손준비금이나 자산의 감손의 결정에 경영자가 사용하는 가정이나 방법론은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증거의 충분성	- 증거의 충분성(예를 들면, 대손 준비금이나 반품 조정 준비금)의 판단이 요구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의 도표에서 설명되고 있는 영역에서 회계처리에 있어서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가적 판단은 “고도의 전문가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회계기준에서의 전문가적 판단은 “원칙주의 회계처리”라는 국제회계기준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개념을 고려한 판단이며, 이러한 “원칙주의 회계처리”에 기반하여 회계처리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적 판단이 “고도의 전문가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전문가들의 업무가 직업전문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적인 업무라는 점이 기본적으로 수행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기 도표에서 설명된 영역을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전문성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전문적 판단, 이른바 고도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원칙주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표¹³⁰⁾와 같은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표 3-2> 전문가적 판단 요소

항 목	내 용
거래의 분석	기업이 실시하는 거래의 사업 목적과 실질을 포함한 분석
사실의 내용	재무제표의 작성공표시 이용 가능한 중요한 사실
분석 및 리뷰	회계원칙을 포함한 적절한 문헌의 분석과 리뷰
대체적인 견해	합리적이고, 대체적인 회계 처리의 장점·단점을 포함한 대체적인 견해와 견적
합리성	대체적 회계 처리 및 견적의 선택한 회계 처리의 합리성 및 투자가의 요구의 합리성과 외부 전문가의 판단
실질과 사업 목적	선택한 대체적 또는 견적과 거래 및 그 과제와 사업 목적 및 실질의 관계
전문성	입수된 정보와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수준에 대하여
실무의 다양성	대체적 또는 견적에 대한 다양한 실무의 검토
계속성	대체적 또는 견적의 적용의 계속성
적절성 및 신뢰성	사용된 가정 및 데이터의 적절성 및 신뢰성
적시성	판단시 사용된 시간 및 작업의 충분성

130) 五十嵐則夫・町田祥弘, 앞의 책, p.7.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도표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문과 요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회계처리는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감사인, 회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기존의 전문적인 판단 보다 월등한 고도의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II. 연결재무제표 관련 공시

1.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수시공시 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공시제도 운영이다. 즉,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회계정보¹³¹⁾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시할 경우, 기존의 개별재무제표에 의한 공시가 아닌 연결실체의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공시되는 정보의 공시비율과 정보량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수시공시제도의 개선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라고 명칭된 수시공시는 증권시장에서

131) 외국의 논의에 있어서 회계정보 등과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2가지 종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자본시장 정보의 이중기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역할과 기능으로서 일종의 “재화(Commodity)”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는 상품시장과 같은 물물이 교환되는 시장의 구조내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일종의 재화(Commodity)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을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시장으로 전제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정보거래와 증권거래 등을 교환구조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공시 등을 통하여 유포되는 정보의 시장가격이 그 생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며,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경제적 효율성을 의미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역할과 기능은 가격결정기구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한다. 즉, 자본시장에서 공시 등을 통하여 유포되는 정보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하여 증권이나 회사가치 등에 대한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는 고전주의 경제학과의 시장이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개념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Jonathan E. A. ten Oever, Case Note: Insider Trading and the Dual Role of Information: United States v. O'Hagan, 106 YALE L. J. 1325 (January, 1997), pp. 1328-29)

항시적인 정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시대상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부도발생·합병·주식교환 등)은 연결실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가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¹³²⁾ 즉, 이러한 수시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공시제도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시되는 회계정보량과 공시비율 등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수시공시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법규 또는 기준과 같은 개별적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됨으로써 규정상 실체를 가지는 개별재무제표와는 다르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를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 파악하여 동일한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 회계상황, 경영성과 등을 재무제표로 작성함으로써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며, 기본적으로 지배회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의 경우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등 회계정보가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작성된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변화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배회사가 상장기업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즉, 지배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상장종속회사를 갖고 있더라도, 일정 사항에 해당되는 회계정보는 지배회사의 공시대상에

132) http://www.krx.co.kr/m7/m7_3/m7_3_1/m7_3_1_2/UHPKOR07003_01_02_02.html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상장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이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비상장기업인 종속회사의 공시사항이 공시대상으로 될 수 있다.¹³³⁾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투자결정의 판단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회계공시에서 누락되어 공시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있는 정보제공¹³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지배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계정보가 공시된다면, 종속회사의 회계정보는 대부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반영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상장기업이 아니고 종속회사가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지배회사의 의한 종속회사 투자비율 등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와의 재무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공시기준의 최근 변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공시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4월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33) 정석우·신현걸·임태균·권성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상장·공시제도 정비방안, 한국거래소 (2009.11), p.114.

134) 신뢰성있는 정보제공은 법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의미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로 법적으로 애매한 개념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기업공시 책임자들에 대한 의무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과 규범과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하여 기업공시 관련 법제의 규범성을 획득할 수 있다. 셋째로,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집단적 형태의 행동들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근거로서 설명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정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Margaret M. Blair & Lynn A. Stout, Trust, Trustworthiness, and the Behavioral Foundations of Corporate Law, 149 U. PA L. REV. 1735 (2000,2001), p.1736)

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른 수시 공시제도 개선, ② 사후심사 중심의 공시관리체계 마련, ③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의 합리적 개선, ④ 기타 공시제도 개선사항 등인데, 이 중에서 주목할만한 개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시공시의무 적용과 종속회사 관련 수시공시의무 신설이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시공시의무 적용”에 관하여 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재무정보 관련 수시공시 의무비율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는데, 수시공시 의무비율은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공시사항 적용을 현행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며, “종속회사 관련 수시공시의무 신설”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됨에 따라 상장법인에 중대한 영향(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종속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관련사항)에 대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신설하였고, 다만 도입 초기 상장법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 공시 지연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는 2013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였다.¹³⁵⁾

<표 3-3>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사항 및 기준 개정내용

연결종속회사 발생사실 (공시대상항목)	공 시 기 준	
	종속회사 관련 판단요소	지배회사 관련 제출기준
영업활동의 정지	- 정지된 해당 영업부문의 매출액 규모가	- 연결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135) 한국거래소, K-IFRS 관련 공시제도 개선 및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보도자료 (2013.2.22.), pp.1~1.

제 1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

연결종속회사 발생사실 (공시대상항목)	공 시 기 준	
	종속회사 관련 판단요소	지배회사 관련 제출기준
자본증가(감소) 결의	- 자본의 증가(감소) 금액	- 연결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
EB 발행	- 지배회사에 대한 EB발행	- 지배회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 (i, ii, iii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양수도대상 영업부문의 자산금액	- 연결 자산의 5% 이상인 경우
	ii) 양수도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액	- 연결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iii) 양수도대상 영업부문의 부채금액	- 연결 부채의 5% 이상인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도	자산양수도 해당가액	- 연결 자산의 5% 이상인 경우
중요한 자산의 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계약 등 체결	- ‘중요한 자산의 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양도하는 자산규모가 연결 자산의 5% 이상인 경우
주식교환 · 이전	- 주식교환 등이 결정된 종속회사 자산 규모	- 연결 자산의 5% 이상인 경우
분할 · 합병 · 분할합병 등	- 합병 등이 발생한 종속회사 자산 규모	- 연결 자산의 5% 이상인 경우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 · 폐지 · 매매거래 정지 조치	- 해외시장 상장폐지 등 사유가 발생한 종속회사의 자산 규모	- 연결 자산의 5% 이상인 경우

제 3 장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연결종속회사 발생사실 (공시대상항목)	공 시 기 준	
	종속회사 관련 판단요소	지배회사 관련 제출기준
부도발생 및 당좌거래 정지	- 부도 등이 발생한 종속회사 자산 규모가	- 연결 자산의 5%이상인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종속회사 자산 규모	- 연결 자산의 5%이상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조치	- 종속회사 자산 규모	- 연결 자산의 5%이상인 경우
해산사유 발생	- 해산되는 종속회사의 자산 규모	- 연결 자산의 5%이상인 경우
증권에 대한 중대한 소송제기	- 소송관련 청구금액	- 연결 자산의 5%이상인 경우

※ 출처: 한국거래소, K-IFRS 관련 공시제도 개선 및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보도자료 (2013.2.22.)

상기한 바와 같은 규정개정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공시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국제회계기준 도입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도정착을 위한 사전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공시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연결재무제표 공시 관련 사례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사항 검토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심사대상 재무제표 범위

상장예비심사를 위하여 비상장기업이 제출하는 과거 3개년도 재무제표를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다.¹³⁶⁾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을 구분하여 상장예정법인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¹³⁷⁾

[참고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 1)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 2) 신규상장신청인에 대한 재무서류
 -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사업연도(이하 “신청사업연도”라 한다)의 개별·연결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만, 신청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지난 경우만 제출한다.
- 3) 주권의 견양 또는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
- 4) 법인등기부등본
- 5) 정 관
- 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주명부(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 주주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와 법 제316조제1항의 실질주주명부(이하 “실질주주명부”라 한다)
- 7) 명의개서대행회사와 증권의 명의개서업무 등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명의개서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계약서 사본
- 8) 별지 제16호 서식의 명목회사 확인서
- 9)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136) 정석우·신현걸·임태균·권성수, 앞의 책, p.210.

137)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7항 제1호.

- 가) 자회사에 대한 2)의 서류
 - 나) 규정 제31조제2항을 적용받는 지주회사는 해당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향후 3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다) 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서 사본(신고 전인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한다)이나 금융위원회의 인가서 사본
- 10)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상장을 신청한 상장예정기업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감사가 가능한지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①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모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방법, ② 국제회계기준 최초 도입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직전전연도 재무제표는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¹³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국제회계기준 최초 도입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새로운 규제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상장하는 것은 일정한 규제의 틀안에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규제를 받는 대신에 상장으로 인한 혜택을 향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경영성과의 도출과 기업성

138) 정석우 · 신현걸 · 임태균 · 권성수, 앞의 책, pp.211~212.

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또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비상장기업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업이 경영전략상 상장을 결정하였을 때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3개 사업연도 전부터 작성했어야 한다면, 이는 기업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환경조성에 역행하는 제도일 수 있다. 최소한 3개 사업연도를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상장을 하게 된다면, 상장결정을 그 이전에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전략의 수립에 매우 어려운 장애가 될 수 있다.

Ⅲ.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공시

1. 공정가치평가의 도입과 문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의 개념을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¹³⁹⁾ 또한, 공정가치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그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¹⁴⁰⁾ 그리고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¹⁴¹⁾

공정가치는 용역과 재화와 같이 시장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시장가치의 평가가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수치화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거래의 유

13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1. 11.18.), p.12.

14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p.12.

1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p.15.

동성이 높은 상황이 유지됨과 동시에 합리적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이성적으로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간에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정가치평가는 필연적으로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전제를 추론하여야 하고, 이들간의 거래에 이루어지는 가격 또는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입장에서 매우 주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공시되는 회계정보는 목적적합적이 위해서 반드시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충분히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공정가치평가의 확대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금융자산·부채와 유형·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평가가 확대되어 적용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¹⁴²⁾

2. 공정가치평가에 대응한 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인 공정가치평가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은 회계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가치평가는 회계처리에 관한 회사 공시의무자들의 재량권과도 관련을 가지게 된다. 즉, 공정가치평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회사 공시의무자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연결된다면, 회계공시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⁴³⁾ 따라서 확대된 공정가치평가의 영역에

142) 고영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평가,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43호 (2011.7), p.114.

143) 회계정보의 제공은 경영자의 재량권 한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회계처리 선택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에 관하여는, 회계정보가 가지는 특징으로서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재량을 최대한 축소시키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영자에 의한 유리한 회계처리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장되고 있으며, 회계부정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鈴木直行, 會計情報の提供プロセスに

서 평가되어 공시되는 정보는 시장에서 투자자의 판단을 좌우할 수 정보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의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외국사례로서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비활성 시장 및 비자발적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정시가를 사용하거나 시가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중간재무제표에서도 공정가치 측정 관련된 주석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⁴⁴⁾ 이러한 외국의 입장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주식공시사항의 강화 등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가치평가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가치평가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노력은 실질적인 회계실무자와 관련 부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어 개선됨으로써 가능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 주식공시의 보완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서 기업분석에 필요한 주요 공시사항(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 상세 표시, 매출채권(매입채무) 금액의 구분 등)은 K-IFRS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시토록 하고, 공통적인 주식사항에 대해서는 공시양식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를 통한 잠정 영업실적에 대하여 공시할 경우 영업손익 산정기준 및 그 변동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연결당기순이익의 경우 지배지분손익과 비지배지분손익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개선됨으로써, 금융감독원은 K-IFR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공시가 필요한 사항(판매비와 관리비 내역, 차입금 내역, 매출채권 및 매입채

おける経営者の裁量の意義と問題点, 金融研究 (2003.3), p.22)

144) 송인만·노형식, IFRS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한국금융연구원 (2011.3), p.28.

무 구분표시, 금융수익비용 상세 내역, 기타 수익비용 상세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모범사례(Best Practice)와 함께 기업들에 배포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국제회계기준 재무공시사항 체크리스트 보완 및 새로운 모범사례 발굴과 전파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다.¹⁴⁵⁾

다만, IFRS의 근본적인 성격상 원칙주의에 철저히 입각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경영자가 원칙의 범위 안에서 또는 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상황 및 재무판단에 따른 회계 처리·공시를 실시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의 과정상 내리게 되는 판단을 재무제표의 주기로 공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작성내용과 주기의 분량이 매우 많아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수행되었던 재무제표의 감사에 있어서도 감사의 대상에는 재무제표와 그 주기가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기는 당연히 회계감사의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IFRS하에서의 주식공시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감사관행에 비하여 상당히 분량이 증가하여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다양한 회계 처리·공시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이 기재된 주기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른 대응방안 내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감사가 어디까지나 수치화된 정보 및 계산에 관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주기를 검토 및 감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원칙주의에 근거한 IFRS에서 재무제표상 공시되는 주기는 정량적인 정보가 아닌 정성적인 정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실무에 있어서 주기의 정리방식을 통일적이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재무제표와 주기, 주

145) 금융감독원, IFRS 적용 관련 간담회 개최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 (2012.6.22.), pp.3~4.

기와 재무제표의 정보와의 사이에 판단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회색 영역의 범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재무제표의 범위 밖에 있는 정보가 많은 내용을 포함되어져서 공시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작성에 대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기에 대한 공시제도의 보완이 단순한 리뷰 또는 조사에 의하여 감사를 대체하거나 또는 감사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생략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에 대한 공시의 감사 절차는 수치화된 정보를 증빙하는 절차보다 더욱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요구된다.¹⁴⁶⁾

146)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今川嘉文, 企業情報開示と外部監査制度の強化, 2004)에서는 다음과 같이 “리뷰”과 “감사”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실제로 “리뷰”가 진행되는 세부적인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주식공시절차를 진행할 때에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리뷰 및 외부감사는 모두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일정한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리뷰 및 감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회계감사인으로서의 감사)는 실사, 입회, 확인절차, 거래기록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경과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이것은 “재정상황 및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적극적인 의견(적정 의견)이다. 즉, 외부감사에서는 감사기준 및 감사실시 준칙에 근거하여 거래기록의 신뢰성, 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망라성, 평가 및 표시의 타당성, 비용 및 수익의 기간 귀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이 수단으로서 현금·예금, 유가증권, 고정자산 등의 실사, 재고정리 자산의 실사입회, 채권 및 채무의 확인 등의 절차를 실시한다. 이와 비교하여, 리뷰는 감사인이 질문 및 분석적 절차에 따라 4분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표명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이라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준거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소극적인 보증이며, 외부감사보다 한정적이다. 이와 같이 리뷰는 외부감사와 같은 실증적인 검증 절차는 아니며, 질문 및 분석적 절차에 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일본의 증권거래소의 “4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과 관련된 기준”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① 회사의 업무 및 회사가 속하고 있는 업계의 상황에 대한 질문, ② 회사의 내부 통제 정비 상황 및 직전 결산일 후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질문, ③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 처리의 원칙 및 절차의 내용, 이들의 변경 유무 및 신뢰회계 처리의 원칙, 그리고 절차의 채용의 유무에 관한 질문, ④ 재무 데이터 상호간 또는 재무 이외의 데이터와 재무 데이터 사이의 모순 또는 이상한 변동의 유무를 검토하고, 4분기 재무제표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분석적 절차, ⑤ 주주 총회

IV. 자발적 사전공시제도

1. 자발적 사전공시제도의 필요성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인 원칙중심 회계처리로 인하여 기업공시 담당자들은 충분한 재량이 주어짐과 동시에 공시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기존 IFRS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적용상 혼란이 예상되고 충돌의 문제가 있는 규정들은 유지시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면적인 IFRS의 도입을 감안한다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한 결국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본질적인 특징을 고려한다면, 기업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위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자발적인 재무제표의 사전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 사전공시제도는 회사의 결산직후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사회회의 이름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공시하고,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 감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후적으로 회계감사를 통해 감사의견과 함께 수정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이다.¹⁴⁷⁾ 이 방안은 회계법인

및 이사회 등의 회의록 및 중요한 결재 문서의 열람, ⑥ 중요한 후발 사상(사실과 현상) 또는 우발 사상 등의 발생 유무에 관한 질문 등에 관한 절차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기의 질문은 대상 회사의 기말결산 및 중간결산의 재무제표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감사인인 4분기 재무제표의 리뷰를 실시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회사의 업무내용 및 회사가 속하고 있는 업계의 상황 및 내부 통제 상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대상자는 질문 내용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는 적절한 직무자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今川嘉文, 企業情報開示と外部監査制度の強化, 神戸学院法学 第34卷 第2号 (2004.8), pp.434-436)

147) 미국, 영국, 호주 등의 회계심사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중요한 회계기준 위

의 독립성 위배행위를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제표의 오류여부에 대해 기업의 경영진이 책임지고 있음을 사실상 공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 이용자 역시 감사받지 않고 공시된 재무제표 수치의 신뢰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수치가 바로잡혀져 가는 과정을 인지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무제표가 사전공시되고, 그 이후 수정 재무제표가 공시되었을 때 사전 공시된 재무제표에 의해 자본시장이 반응한다면 저품질 회계정보로 인해 자본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감사인의 감사책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시장의 혼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충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자발적 사전공시제도를 위한 제도 개선

자발적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현행 감리제도와 연계하여 점진적인 제도도입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즉, 자발적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되, 회계감사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자본시장에 공시하지 않고, 금융감독기관에 우선적으로 보고한 후에 감사인은 수정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수정사항이 여러 부분 또는 넓은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심사감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회계감리를 시행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이 아닌 경우 대부분 자발적 정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시 회계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 회사명 언급 없이 시장에 발표함으로써 회사의 조치 수용도를 높이고 있고, 위반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향후 자발적 정정 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수영 · 이영한 · 황문호,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인회계사 (2010.5), p.113).

다만,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원칙중심하에서의 회계공시제도 개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공시제도 운영의 강화를 목적으로 자발적 수정공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즉, 기업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후 감독당국이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¹⁴⁸⁾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후적발 후 처벌위주가 아닌 기업이 재무정보의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감독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현행 위험요소에 근거한 심사대상 기업 선정 요건을 확대하여 재무공시와 관련성이 높은 발행 및 수시공시, 불공정 거래 등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심사대상을 확대하였다.¹⁴⁹⁾ 또한, 감독당국은 재무심사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여,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로 종결하는 방안을 진행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고의적 또는 중요한 오류사항에 관하여 수정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부정 여부를 조사(정밀감리)하고, 심사절차만으로는 고의적 또는 중요한 오류라는 판

148) 현행 제도상 감리절차의 순서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 → 정밀감리 → 위반사항 발견시 감리위원회 등을 거쳐 증선위 조치 → 기업의 수정공시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149) 상시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31조에 따라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조서를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이 회사의 재무정보 공시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관리해야 하고, 단지 감사보고서 정밀감리의 대상선정을 위한 표본추출의 한 방법으로 심사감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회계부정과 오류의 발생 및 왜곡된 재무정보의 공시를 막고, 이를 빨리 수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현재의 회계감독국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감독원의 증권감독국에서 수행하는 공시중 회계, 재무정보의 내용은 회계서비스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 회계서비스본부는 재무정보 심사의 대상을 회계, 재무정보의 수시공시, 분반기 재무정보 공시, 경영자의 손익전망 공시, 사업보고서 공시중 회계정보 관련 공시 전체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상시 감시하고 담당 회사에게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권수영·이영한·황문호, 국제회계기준(IFRS) 및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11.6), pp.54~55)

단이 어려운 경우나, 회사가 심사감리에 의도적인 방해행위 등 비협조적일 경우에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¹⁵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원칙중심하에서의 자발적 사전공시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과 회계공시제도 개선을 추구하여 투자자 보호와 공시제도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목적에 따라서 제도의 형태 또는 실제 운영방향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에 있어서 자발적 사전공시제도의 운영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라는 공시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자본시장에서의 효율성과 자체적인 시장규율 효과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회계공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발적 사전공시제도는 반드시 법률적인 규제와 제도운영에 의한 방법보다는 자율규제기관의 활동 등을 통하여 시장기반형 공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⁵¹⁾

150) 금융위원회,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2011.11.1.), 보도참고자료, pp.21~22.

151)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기업공시순위를 위한 공시의무이행지수”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공시의 신뢰성과 정확성, 신속성 등 중요한 제도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을 요건으로 하여 기업이 공시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간 등수(ranking)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시의무이행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적극적 공시, 정정공시, 최신정보공시, 악재의 공시 등 관련 항목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스스로 자율적인 공시시스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법률에 의한 규제와 제도운영 보다는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최선관행화시키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상범, 기업공시의 자율규제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공시 순위(Corporate-Disclosure Ranking)를 위한 공시업무이행지수 개발을 중심으로, 상장협 제52호 (2005.9), p.174, p.185)

제 2 절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I. 개 요

1. 신국제감사기준의 특징

우리나라는 2013년 국제회계감사기준(New ISA)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감사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의 감사기준과 도입하려는 국제회계감사기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사기준이 가지는 명확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목적중심의 감사(Objectives-based)와 위험중심의 감사(Risk-based)를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감사품질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감사기준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도 제기되었다. 물론, 국내에 이미 시행되어온 감사기준과 비교하였을 때에 충돌가능성이 높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감사기준 또한 아직까지는 많이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감사의 목적이 크게 변화된다는 점은 현행 감사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제감사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목적 중심중심의 감사접근 방법(Objectives-oriented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¹⁵²⁾ 이는 감사인이 규정상 나타나 있는 감사

152)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감사의 접근방법(audit approach)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입증절차 접근방법(the substantive procedures approach)로서, 증빙접근방법(the vouching approach)또는 직접검증 접근법(the direct verification approach)이라고도 한다. 재무제표의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고 많은 분량의 거래와 계정잔액을 시사(testing)하는데 집중하는 방법이다. ② 대차대조표 접근방법(the balance sheet approach)으로서 대차대조표 계정에 입증절차(substantive proce-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목적의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규정예 의한 감사진행이 아니라, 주제별로 감사목적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외부회계감사인인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즉, 단순 규정의 적용에 의한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감사대상이 되는 해당 기업의 사업과 전략 그리고 목적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감사의 기본적인 근거로 삼아서 감사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험중심의 감사접근방법이라고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감사진행의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감사 및 기업경영인에 대한 책임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dures)를 집중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매우 적은 입증절차를 수행한다.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은 모든 대차대조표 계정에 대한 경영자의 주장(management assertions)이 시사(test)되고 검증되면 회계기간 동안 보고된 손익계정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③ 시스템기준 접근방법(the system-based approach)으로서, 이 접근방법에서는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효과성(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s)을 평가하고 시스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에 입증절차를 집중하는 방법이다. 시스템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에는 입증절차를 축소한다. ④ 위험기준 접근방법(the risk-based approach)으로서, 이 방법에서는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결과로서 오류(errors) 또는 누락(omission)에 의해 왜곡(misstatements)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재무제표 분야에 감사를 집중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는 사업위험(business risk)을 평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영기·박재환·박종성·전규안·이영한,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9), p.4)

<표 3-4> 개정 회계감사기준 내용

구 분	현행 회계감사기준	개정 회계감사기준
형식면 - 감사기준의 구성 - 적용지침 - 분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 (목적, 용어) • 기본원리와 주요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 시행일 • 목적 (Objectives)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 요구사항 (Requir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 위 - 절 차 - 문서화 ※감사의 전반목적과 개별 요구사항간의 연계체계 (Objective oriented decription) - 감사의 전반목적 ↔ 감사기준서 별 개별목적 ↔ 감사기준서 별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지침 및 관련 보론 (Append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Application and other Explanatory Material) •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 대한 보론 (Append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사항과 지침의 분량이 영어원문 약 320p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 증가로 요구사항과 지침의 분량이 영어원문 약 700page (현행기준 2배 이상)

제 2 절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구 분	현행 회계감사기준	개정 회계감사기준
내용면		
- 감사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nsaction Approach (거래중심 감사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k Approach(위험중심 감사접근법) : 특히, 315, 330,500에 적용
- 내부통제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O* Framework (1992) 이전의 내부통제 개념 ※ 내부통제를 3가지 요소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제도, 통제환경, 통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O Framework의 내부통제 개념 ※ 내부통제를 5가지 요소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환경, 위험평가,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모니터링
- 감사보고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을 705(감사의견의 변형)과 706(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으로 분리하였고, 감사보고서 문구도 수정
-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감사문서), 감사문서의 부당한 훼손이나 변경을 명문으로 금지함. 위험중심접근법에 따라 각 단계별로 문서화를 요구함
- 연결 재무제표, 지분법 적용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감사절차가 명확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감사절차(그룹재무제표 감사)를 신설 • 종속기업 감사인에 대한 지배기업 감사인의 요구사항도 신설

제 3 장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구 분	현행 회계감사기준	개정 회계감사기준
- 문장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리와 주요절차 : ~ 하여야 한다 (should) ● 적용지침 : 현재시제 또는 조동사 (may, might, can, would, …….) 	<p>※ K-IFRS에서 연결채무제표가 주채무제표인 것과 상호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사항(Requirements) : ~ 하여야 한다 (should → shall) ● 기타 모든 문장 : 의미가 모호한 현재시제 표현을 최소화 시킴 <p>※ SHALL로 변경시킨 이유 법률, IFRS는 shall로 표현하고 있고, 국제금융감독기구 (IOSCO) 등 관계기관이 요구한 감사기준의 규범적 성격을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자체 제정하여 포함시킴(감사기준 800) - 적용대상: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개별기준서마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Considerations specific to smaller entities)”을 추가하고 800번 삭제 - 적용대상 : 주로 비상장기업이나 경우에 따라 소규모 상장기업 감사에도 적용 가능
- 규범성, 내용의 세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지향적 ● 세부적인 사항의 설명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지향적인 것은 동일하나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규범성을 강화함 ● 그 동안 의문이 제기되었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구 분	현행 회계감사기준	개정 회계감사기준
		(“적용 및 기타 설명 자료” 제시)

※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 (2012.12.12) 참조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http://www.kicpa.or.kr>,

<http://acct.fss.or.kr/fss/acc/main.jsp>

2. 주요 제도개선 사항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사기준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탄력적인 감사기준 적용을 위한 제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인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 및 감사보조인 교체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면서, 감사인의 선임과 감사계약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필수적인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감리제도 운영을 통한 회계감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국제감사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인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국제감사기준에 부합하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실무적 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관련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논의이며, 이는 그들간에 있어서 업무와 책임의 분배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목적은 연결재무제표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자본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결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는 연결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회사와 모든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제표가 감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¹⁵³⁾ 따라서 국제감사기준의 도입과 관련된 중요 쟁점으로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II. 회계감사기준 제정 관련 규정

1. 회계감사기준 제정과정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감사기준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를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사전 승인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¹⁵⁴⁾ 따라서 신국제회계감사기준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감사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였는데, 이는 감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위원회의 공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국제회계감사기준의 도입

153) 우용상·김우영·정광화, New ISA 600(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시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 (2011.11), pp.5~6

154)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에 관하여는 위임입법의 원리와 법규명령의 합헌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즉, 헌법 제40조, 제70조 및 제95조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법에서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위임형식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의 상대방 역시 행정기관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권한을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에는 헌법위반의 소지 역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금융위원회의 승인기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영기·박재환·박중성·전규안·이영한,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9), p.32)

이 되는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5 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의6(회계감사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기준 사전승인의 탄력적 운영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에 의한 감사기준의 제정은 절차적으로 합헌성을 보장하고, 민간기관에서 제정된 기준에 대한 규범을 부여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회계감사기준은 대체적인 국제적 합의가 기반이 된 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내용을 국내에서 채택해야 되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있어서도 국제적은 제정된 기준에 관하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할 입장으로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외적으로 그대로 통용되는 기준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과정상 국제적인 통일적 기준에 반하는 내용이 반영 또는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기준에 대한 부합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수해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감사기준의 규범성 획득과 제도운영의 감독통제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기준의 개정과 변경이 요청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승인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국제회계감사기준과의 정합성 여부만을 심사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가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법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아니지만, 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감사기준은 외국의 제정기관에서 수시로 제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우리나라의 제도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파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제개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국내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Ⅲ. 감사보고서 관련 규정

1. 감사보고서 포함내용의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관련된 법령은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위원회 규정과 한국거래소 규정 등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회계기준, 감사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도운영이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에 속하는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은 사실상 최소한의 기준과 최대한의 범위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하위법령이 이를 채워

나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제회계감사기준이 도입된 상황은 상기한 기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사보고서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감법 제7조의2 제2항은 감사인에 의하여 작성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외감법상의 감사보고서 포함내용은 현재 도입된 신국제감사기준의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신국제감사기준이 법상 지위의 측면에 있어서 외감법의 수권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합성을 위한 국제 통용기준을 도입한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제감사기준상 감사보고서 포함내용

신국제감사기준 700에서는 감사보고서에 감사범위,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견 및 기타 법령 및 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등을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국제감사기준이 도입 이후에는 외감법 제7조의2 제2항도 신국제감사기준 700에 부합되게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감사보고서에 감사범위,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효과성 및 구축정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는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¹⁵⁵⁾

**[참고기준]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2012.12.1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25.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또는 기타 적절한 용어)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구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26.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에는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설명할 때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정한 표시”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언급을 하여야 한다.
29.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근거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24 참조)
30.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것을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또한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25-A65 참조)
31. 감사보고서는 해당 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a) 감사에는 재무제표 내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됨
 - (b) 이러한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름.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155) 정영기 · 박재환 · 박종성 · 전규안 · 이영한, 앞의 책, p.35.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하지만, 이는 내부 통제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표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내부통제에 대한 고려가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표명 목적이 아니라는 문구는 삭제하여야 한다.

- (c) 감사는 또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

IV.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

1.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제도의 취지 및 문제점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은 과거 감사법인의 주기적 교체 규정과 관련하여, 감사법인의 주기적 교체규정이 폐지되면서 그 제도와 유사한 취지가 유지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법인의 주기적 교체제도는 장기간의 감사로 인한 기업과의 유착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회계법인 교체로 새로운 감사인을 통해 그 동안 간과될 수 있었던 기업의 내부회계통및 회계 시스템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미국에서 엔론사태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당시 도입여부를 검토중인 제도였지만 미국 보다 앞서 도입하였는데, 상장기업의 경우 6년마다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회사의 관계상 동일 회계법인의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와 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만 예외를 인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¹⁵⁶⁾

156) 권대영, 회계제도선진화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BFL 제3호 (2004.1), p.120.

감사법인의 주기적 교체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이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외감법에 의하게 되면,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 조(감사인)

-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 ⑥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국제감사기준의 도입 이전에 기준이 되었던 회계감사기준은 이른바 “System 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었던데 반하여, 신국제감사기준은 이른바 “Risk based approach”를 기초로 감사수행을 하게

되며, “Risk based approach”에 기초한 감사수행은 감사인이 기업의 목적, 사업전략,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피감사회사의 사업위험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¹⁵⁷⁾ 재무제표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던 기존의 감사수행방식과는 다르게 신국제감사기준에서의 감사는 기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경영시스템 그리고 내부적인 경영활동 등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

[참고기준]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2012.12.12.)」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4. 이 감사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b) 사업위험-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영전략을 집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적 상황, 사건, 환경,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또는 기업이 부적합한 목적과 전략을 수립하여 발생하는 위험
11.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 (d) 기업의 목적과 전략 및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관련 사업위험

[참고기준]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2012.12.12.)」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5.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핵심 업무팀원들은 업무팀원간의 토의를 계획하고 참여하는 등 감사계획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제도 개선방향

상기한 국제감사기준의 내용을 참고하면, 감사인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영전략을 집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

157) 정영기 · 박재환 · 박종성 · 전규안 · 이영한, 앞의 책, p.35.

의적 상황, 사건, 환경,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또는 기업이 부적합한 목적과 전략을 수립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모두 파악하여 감사를 수행하게 된다.¹⁵⁸⁾ 해당 기업의 내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어나 경영진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을 파악하여 기업을 경영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¹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에 참여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고 기업의 회계상태를 점검하는 감사인이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회계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이해를 기반으로

158)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감사계획 단계에서 “기업의 사업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는 감사리스크, 중요성 평가, 감사 실시, 감사의견 표명 등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는 감사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즉, ① 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기업의 외부 환경, 경쟁 환경, 규제 환경 및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며, ② 변수(variation)에 대한 전략의 분석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에 주어진 외부 환경에 있어서 가치 창조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업목표의 내용, 기업의 목적,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조직 구조의 분석하고, ③ 변수(variation) 관리의 분석으로서 기업의 재무적인 목표나 그 달성 상황 및 변수(variation) 전략의 실천을 위하여 가버넌스나 관리구조의 분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영 성적, 재정상태, 리스크관리 사업분야별 업적 등의 분석하며, ④ 변수(variation) 플랫폼의 분석으로서 가치(value) 관리의 목적 달성에 관한 기반이 되는 변수(variation) 운영 및 관리분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노베이션, 브랜드, 고객, 공급사슬(supply chain), 종업원, 사회환경적 평판의 분석을 포함한다. (五十嵐則夫・町田祥弘, IFRSの下での財務諸表監査の課題, 「企業情報開示システムの最適設計」 第4編 IFRS導入と監査のあり方,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1-J-016 (2011.3), p.11)

159) 이러한 회사 내부의 이사와 경영진의 위험파악에 관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효율성 및 투명성으로 좌우된다. 이른바,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논의는 이사 및 경영진의 경영효율성과 권한 및 의무의 분배 그리고 책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데, 기업의 위험파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결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공시제도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① 이사회 독립성이 높을수록 공시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②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공시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③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공시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며, ④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더 높을수록 공시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⑤ 경영자의 소유지분율이 낮을수록 공시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손성규, 수시공시이론 : 제도 및 정책, 박영사 (2009), p.193)

하는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감사대상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핵심 업무팀원들은 업무팀원간의 감사업무 협력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감사기준이 갖고 있는 특성인 절차중심적 감사업무와 기업경영 내부의 위험을 전략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전문성 요청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외감법상에 있는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규정은 이러한 신국제감사기준과 충돌될 수 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¹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이사 또는 감사보조자 교체를 강제하는 현행 외감법 규정은 회사 및 해당산업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며, 이는 신국제감사기준에서 취하고 있는 Risk-based approach와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3년마다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를 강제하게 되면 산업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우며,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일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¹⁶¹⁾

현재 감사인 교체제도에 대하여 통계방법과 공학적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에서는 감사관련 업무자의 강제 교체가 감사품질의 제고와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강제교체제도는 계속 감사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단면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무리한 제도로 분석하고 있

160) 이처럼 신국제감사기준이 “Risk-based approach”를 강조함에 따라 회계감사과정에서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기업 및 산업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의 파트너 중심의 감사계획 수립과정에서 탈피하여 전체 핵심감사인력이 감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영기·박재환·박종성·전규안·이영한, 앞의 책, p.29)

161) 정영기·박재환·박종성·전규안·이영한, 앞의 책, p.29.

고,¹⁶²⁾ 감사인 교체여부에 따른 감사품질은 감사인 교체기업이 비교체 기업보다 유의하게 교체연도에 재량발생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사품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⁶³⁾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은 그 교체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궁극에 가서는 감사법인의 주기적 교체규정과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감사계약의 해지와 감사인의 선임 관련 규정

1. 감사계약 해지제도와 감사인선임위원회 역할 확대

현행 외감법에서는 과거 회사에게만 인정되었던 감사계약의 해지권을 감사인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즉, 외감법 제6조에서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감사계약의 해지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감사대상 회사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62) 정영무·이기세·전성일,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2009), p.15.

163) 권영호, 감사인 교체와 규모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25집 (2009.3), p.152.

그러나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 선임, 해지 등에 관하여 해당 감사대상회사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즉, 감사인의 변경, 선임, 계약해지에 관하여 이사, 감사 또는 주주총회와 같이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직기구와의 협의 중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기능면에 있어서 감사계약의 해지사항에 대해서는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있다. “감사인 선임”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를 취급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감사계약의 해지사항은 감사인 선임의 다양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항이며, 특히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이 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 발생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경우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6 조(감사인의 권한 등)

- ③ 감사인은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감사인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의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4.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그 감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고기준]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2012.12.12.)」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8. 왜곡표시의 결과로 감사인이 해당 감사를 계속하여 수행할 감사인의 능력에 의문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환경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감사인을 선임한 , 또는 경우에 따라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해당 상황에 책임 법률적 책임을 결정함

- (b) 관련 법규상 감사업무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함.
- (c) 감사인이 감사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i)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해지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토의
 - (ii) 감사인을 선임한, 또는 경우에 따라 감독당국에 이유를 보고할 전문가로서의 요구사항이나 법률적인 이 존재하는지 결정 (문단 A54 - A57 참조)

**[참고기준]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2012.12.1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A44.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하고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감사범위의 제한을 근거로 감사의견을 변형시킴
- 다른 일련의 조치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음
- 제3자(예를 들어 규제기관), 기업의 소유자(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주주)와 같이 지배구조상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위기관 또는 공공부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정부의 주무부서나 의회와 커뮤니케이션함
-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감사업무를 해지함

2. 감사인 교체의 탄력적 허용

현행 외감법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규정을 중심으로 선임변경사유, 감사인 해임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일정한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앞에선 언급한 바와 같이,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핵심 업무팀원들은 업무팀원간의 감사업무 협력관계를 매우 중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

결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연결감사인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하는 감사업무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감사기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감사기준의 특징을 감안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됨과 동시에, 감사실패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관계에 있어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여 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한 상황은 감사인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사인 교체 또는 선임과정에 법적인 장애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외감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감사인들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인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¹⁶⁴⁾

164) 선행연구(정영기·박재환·박종성·전규안·이영한,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pp.42~43)에서는 지배회사의 입장(감사보수의 인상)과 종속회사의 입장(이중감사의 부담)에 의하여 향후에는 종속회사의 감사인과 지배회사 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일치시키기 위해 감사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외감법 시행령 제3조에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할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외감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서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감사인의 직무상 위반 등을 주요 사유로 하여 교체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외감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 교체가능사유를 포함시키는 것은 내용과 체계상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책임관계의 명확화” 등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별도 규정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감사인의 선임 등)

⑦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고기준]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2012.12.1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11.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 및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수행하며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상황에 적

합한지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부문감사인을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법규상 부문감사인의 언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부문감사인에 대한 언급으로써 그룹업무수행이사 또는 그룹업무수행이사의 회계법인이 그룹감사의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VI. 감사인의 책임

1.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점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외부회계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2012.12.1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에서는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 및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수행하며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법규상 부문감사인의 언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부문감사인에 대한 언급으로써 그룹업무수행이사 또는 그룹업무수행이사의 회계법인이 그룹감사의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국제감사기준 600은 그룹감사인의 관여를 기본전제로 하며, 감사보고서 상에 타감사인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룹감사인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룹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¹⁶⁵⁾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65) 정영기·박재환·박중성·전규안·이영한,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9), p.36; 다만, 이 선행연구에서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현행 외감법 제17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이유 한가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감사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 6 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謄寫)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외감법 제17조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결재무제표의 주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간의 법적인 책임을 구분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책임구분 문구표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외감법상 법적 책임구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¹⁶⁶⁾

166) 우용상 · 김우영 · 정광화, New ISA 600(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시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회계학회 (2011.11), pp.26~27.

현행 외감법 제17조 2항의 조문을 살펴보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책임구분 문구표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책임구분 문구표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속회사 감사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감사인이 법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법적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적은 없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책임구분 문구표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주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외감법상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¹⁶⁷⁾

국제회계감사기준에서는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부문감사인을 언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법규상 부문감사인의 언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룹감사인이 그룹감사의견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회계감사기준에서 원칙적으로 책임구분 문구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책임구분 문구표시의 언급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구분 문구가 표시되었어도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감사인이 그룹감사의견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제회계감사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룹감사인이 그룹감사의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부문감사인이 대외적으로 그룹감사의견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¹⁶⁸⁾

167) 우용상·김우영·정광화, 앞의 책, p.27.

168) 우용상·김우영·정광화, 앞의 책, p.27.

[참고기준]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2012.12.1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11.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 및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수행하며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부문감사인을 언급하여서는 안된다. 법규상 부문감사인의 언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부문감사인에 대한 언급으로써 그룹업무수행이사 또는 그룹업무수행이사의 회계법인이 그룹 감사의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의 연대책임 문제점

외감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연대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대책임 규정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인의 책임 문제가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배회사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종속회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배회사 감사인이 책임이 강화된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배회사 감사인의 업무요청 등에 관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외감법 제6조에서 규정된 감사인의 권한에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업무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어느 정도 종속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실무적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도입 방안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으로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비례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대책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감사기준의 도입 이전에도 감사인의 비례책임이 주목받았었는데,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감사기준의 도입 이후에는 그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감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잡한 회계처리와 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임무해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미 1995년 법개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경영진이나 회계감사인이 비례책임(proportionate liability)을 부담하도록 하고,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하는 경우에도 작성주체인 기업공시자와 이에 대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참여 비율과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책임정도로 다르다고 할 것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위반행위 참여자의 책임과 그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경우에는 그 대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 참여자들에 대한 책임범위제한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타당

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인에 대한 비례책임제도 도입은 과거 문제시 되었던 상황에서의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예로서 감사인의 비례책임이 법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전제하면, 감사계약시 감사인으로 참여하는 감사의 비율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비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감사인으로 참여할 때에 체결하는 감사계약서 상에서 연결재무제표 감사의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하게 될 비율을 결정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감사계약서에 체결된 감사참여비율 또는 감사범위비율을 기초로 하여 법상으로 규정된 (비례책임규정이 법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전제하에) 비례책임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 또는 확정할 수 있게 된다.¹⁶⁹⁾

169)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실무적으로 주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SEC는 주감사인이 타감사인과 책임구분을 할 경우 주감사인의 감사비율이 총자산 및 총매출을 기준으로 50% 이상을 차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50% 미만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인정할 지 여부를 심사하고, 또한 Big4 회계법인도 주감사인의 감사비율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갖고 있으며 PwC의 경우 주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비율이 총자산 및 총매출을 기준으로 85% 미만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위험 관리 책임자와 추가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타감사인 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종속회사 감사인으로 타감사인을 이용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의견을 제한했으나 해당 종속회사가 전체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지 않아 주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종속회사 감사인은 의견을 제한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책임구분 표시를 위해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주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의 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우용상·김우영·정광화, 앞의 책, pp.43~44)

제 3 절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감리제도 개선

I. 개 요

1. 우리나라 회계감리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리제도 중심의 회계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계감독의 주무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공시의 주체인 기업과 회계감사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업무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일정규모 미만의 중소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다.¹⁷⁰⁾

이러한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업무는 외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차이가 있는 회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¹⁷¹⁾ 이른바 “감사보고서에 대

1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 제 <1996.12.30>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171)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제도와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① 우리나라의 회계감사는 일정 자산

한 감독”으로서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감독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감독방식이 아닌, 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독하는 감리방식은 그 효율성과 성과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 회계감리제도 개선 쟁점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감리제도는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성과 국제감사기준의 특성이 갖고 있는 현행제도와의 이질성은 현행 감리제도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에 의한 위험중심 감사기준의 도입은 감사환경의 변화에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상장, 비상장기업에 무관하게 모두 외감법에 의해 감사가 수행되는 환경으로서, 자율적인 자본시장 혹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및 요청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법적, 제도적 규정 하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자율적인 감사가 아닌 법정 감사이므로 회계감독체계 또한 상장사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감사에 대하여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점은 상장사 위주의 감사관련 규제가 존재하는 미국, 영국 등의 해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중요한 감사환경의 차이점이 있다. ② 주요국의 회계감독체계에서는 상장기업 감사인에 대한 공적감리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각국 공인회계사회의 자율감리기능이 감사인 감독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회계사회가 모든 회원에 대해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에도 공인회계사회(JICPA 및 ICAA)가 회계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감법에 의한 공적감리체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바,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등 일부 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을 뿐, 자율적인 감리기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③ 미국이나 영국 등의 주요국은 정기적 심사 또는 선제적 심사방식 등을 채택하여 기업이 공시하는 회계정보와 연간보고서 등을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견서(comment letter) 등을 발송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공시수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감리”라는 특유한 감리제도를 갖추고 있는 한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제도는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징을 가진다. (권수영·이영한·황문호, 국제회계기준(IFRS) 및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2011.6), pp.41~43)

특별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감사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회계감독의 중심인 감리제도에도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¹⁷²⁾ 대표적인 변화의 사례로서, 통계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회계원칙의 규정방식과 감리 및 감사인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¹⁷³⁾에 의하면, 명확한 규정중심의 기준에서 보다 불명확한 원칙중심의 기준에서 감사인의 공격적인 의사결정성향이 증가하며, 감리가능성이 증가하면 공격적인 의사결정성향이 감소하고, 원칙중심 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제도개선의 요청에 대응하여 개선방안을 고려할 때에는 현행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전적인 회계감독으로서의 품질관리감리 기능이 제고되어야 하며, 감리결과 조치에 대한 양정기준 등 감사책임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가 이

172) 미국의 SEC에 의하면 원칙중심 회계원칙에서는 회계처리 선택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강력한 회계감독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른바 선의(good faith)에 의한 회계처리가 감독당국에 의하여 처벌이나 제재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감사인이나 회계담당자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기관이 선의에 의한 회계처리가 감사인이나 회계처리 담당자가 그러한 회계처리를 하게 된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앞의 글, p.33)

173) 동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원칙중심의 기준이 감사인의 회계관련 의사결정에서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며, 기준의 제정기관은 원칙중심에 기반한 기준을 제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경영자 등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들의 기회주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원칙중심의 기준 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요구되며,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규제가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의 자의적인 회계선택이 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을 있고, 국제회계기준은 감사인에게 기준의 해석에 대해 전문가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방향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재량적인 회계선택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사후적 감독과 이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회계분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예를 들면 사전감사나 수시감사 등)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심태섭·배수진,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12), pp.22~23).

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감사보고서 감리기능의 보완

1. 현행 감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외감법 제15조 증권선물감사위원회의 감리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감독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이른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보고서에 의한 감리를 간접적인 회계감독이라고 하며, 간접회계감독에 의하여 기업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이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공시하는 재무정보는 시장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에 대해서 2차적인 감독대상 또는 간접적인 감독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 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삭 제

[참고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1조의3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금융감독원은 2005년에 “일반감리” 방식하에서의 획일적인 정밀감리의 문제점 해소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감리방식을 개선하였다. 즉, “일반감리” 방식에서 “단계적감리” 방식으로 감리방식을 변경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⁴⁾ 1단계 “심사감리” 단계에서는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증감·추세분석 등에 의하여 특이사항의 유무만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없으면 종결하는 단계이다. 발견된 특이사항

17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감리방식 개선, 금융감독원 2005년 5월 10일 정례브리핑 자료 (<http://www.fsc.go.kr>, www.fss.or.kr).

이 근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종결처리된다. 2단계 “정밀감리” 단계에서는 “심사감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표 3-5> 단계적감리 도입 특징

구 분	단계적감리 도입전	단계적감리 도입후
감리방식	<p>“일반감리” 방식</p> <p>① 대상 기업의 주요 재무사항을 “중점감리항목”으로 선정</p> <p>② 회계기준 위반혐의와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선정된 기업전체에 대하여) 법적 권한을 발동하여 정밀감리를 실시</p>	<p>“단계적감리” 방식</p> <p>① “심사감리” 단계 :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증감·추세분석 등에 의하여 특이사항 유무 점검. 특이사항 없으면 종결</p> <p>- 특이사항 결정시 변동의 합리성, 항목간의 논리적 연관성 등을 고려</p> <p>② 발견된 특이사항이 근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 없이 종결처리</p> <p>③ “정밀감리”단계 : 심사감리단계에서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p>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 요구	감리대상 선정 즉시 일제히 제출요구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요구

※ 출처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감리방식 개선, 금융감독원 2005년 5월 10일 정례브리핑 자료

[참고조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의2(감사보고서 감리의 방법) ① 감사보고서 감리는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와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감리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증선위는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이사항의 추출을 위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③ 특이사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항목 변동의 합리성, 다른 항목과의 논리적 연관성, 동일 업종 타 회사와의 차이, 금액의 크기, 질적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방법에 의한 심사감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인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타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밀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감리업무의 위탁)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회사(감독원의 감리대상기간에 한한다)

2. 현행 감리제도 보완의 기본방향

현행법상 감리제도는 국제적 경향이 반영된 신국제감사기준의 운용에 있어서는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방식의 감독운영하는 제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 감독의 방향으로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기능¹⁷⁵⁾과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기능이 단일한 기구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¹⁷⁶⁾ 단일 기구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분리된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¹⁷⁷⁾

175)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심사기능(심사감리 및 정밀감리)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사기능(정밀감리의 일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 정보의 심사 및 정밀조사 기능은 회사의 재무정보 공시정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가 제출한 회계정보가 회계기준에 비추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조사하는 기능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품질(accounting quality)의 제고를 목적으로 회사의 회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재무정보 심사기능과 감사품질(audit quality)의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인의 감사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품질관리감리 및 감사인 조사기능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또한 유력하다. (권수영·이영한·황문호, 국제회계기준(IFRS) 및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11.6), pp.52~53.)

176)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감독기관에 의하여 감리제도가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외감법상 감리실시 권한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실시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감리제도의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권·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실시되는 품질관리감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와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177)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공시에 대한 감독과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는 제도로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일의 기구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감독은 투자자들이 적정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 또는 허위정보를 적시에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

한편으로,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이 기업공시의 적시성과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제도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감리제도는 기업공시의 적시성에 기초한 자발적 수정 등의 공시제도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외감법과 외감규정에서 감리와 관련된 내용을 개선하여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재무제표 심사와 회계정보의 부정 및 오류 적발시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단계적 감리제도”의 운영상 특징이었던 특이사항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경우 및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되는 정밀조사에 대한 세부사항도 자본시장법상 제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¹⁷⁸⁾

Ⅲ.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리

1. 연결재무제표 도입에 의한 감리제도 변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에 국제감사기준이 적용되는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으로써 회계감리제도의 운영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개별재무제표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었던 회계감리제도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는 운영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반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은 회계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독립성, 업무의 질적 수준 등을 검사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 감독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10.5), pp.59~60)
178)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앞의 책, pp.118~119.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회계감리제도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의 선정은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통한 감리를 수행한 이후에, 문제점과 오류가 적발된 기업에 대하여 정밀감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정밀감리단계를 경유하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¹⁷⁹⁾ 그런데 심사감리단계에서 재무비율 분석 등으로 대상 재무제표의 문제점과 오류를 적발하여 검토하에 되지만, 이때에 적용되는 재무비율 분석모형은 과거의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개발된 분석도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전제로 적용하여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예정하여 적용될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모형이 새롭게 개발되어 회계감리제도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¹⁸⁰⁾

179) 현행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사보고서 감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표본감리: 계량적 분석방법, 무작위표본추출방법 등에 의하여 선정된 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로서, 표본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추세, 비율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심사감리와 그 결과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실시하는 정밀감리로 구분된다. ② 혐의감: 민원제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위반 혐의가 통보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이다. ③ 위탁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위반혐의가 통보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이다. (금융감독원, 2013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2013.3.28 보도자료)

180) 권수영 · 이영한 · 황문호, 앞의 글, p.63.

<표 3-6> 연결재무제표 감리방식 비교

(연결 재무제표 구성)	종 전	개 선
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 일부 감리실시	• 전면 감리실시
↑ 연결조정 +	• 감리실시	• 감리실시
+	N/A (개별감리)	• 감리실시
+	N/A (개별감리)	• 감리실시
+	N/A	• 혐의사항 발견시 감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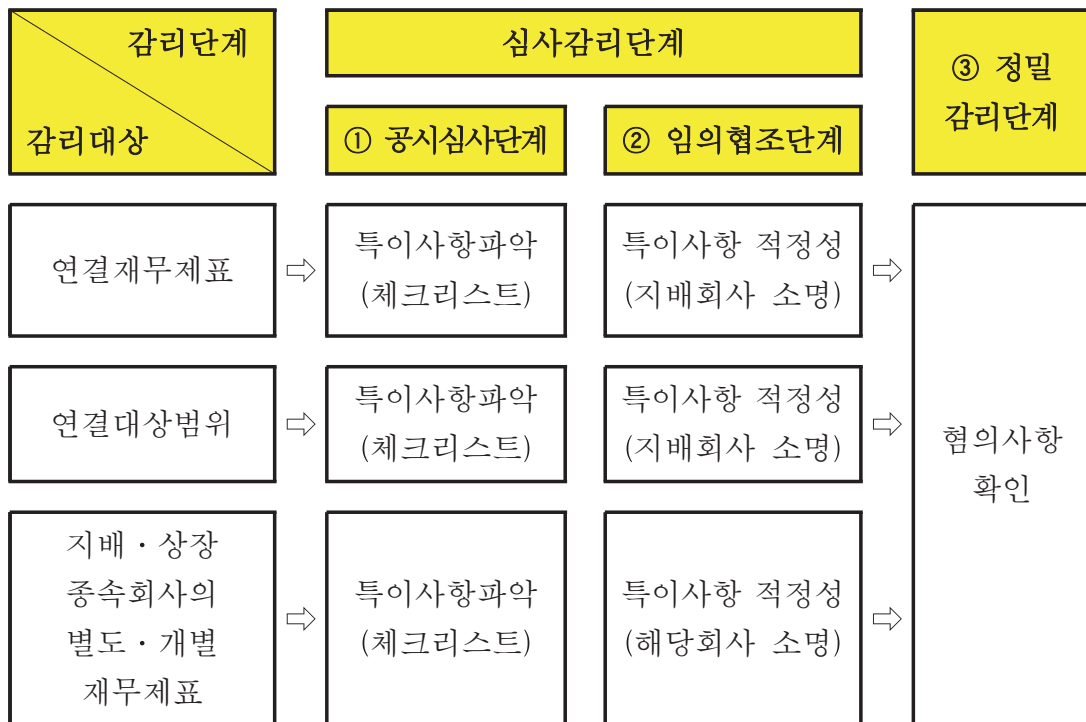
※ 출처: 금융감독원, K-IFRS 연결재무제표 공시현황 및 감독방향, 정례브리핑 자료 (2012.7.11), p.7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감리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⁸¹⁾ 즉, 연결재무제표와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함께 심사감리를 시행하고 특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밀감리 착수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상장종속회사는 심사감리대상에 포함하고, 비상장 종속회사는 혐의사항이 발견

181) 금융감독원, IFRS 시대에 부응하는 2012년 감리업무 운영방안, 정례브리핑 자료 (2012. 5. 8), p.6. (<http://www.fss.or.kr>).

된 경우에 감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연속적 지배·종속관계로 연결 실체 내부 다수의 연결채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최상위지배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연결실체를 감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결실체감리 실시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공시심사단계”에서는 공시자료를 대상으로 심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특이사항 유무를 파악하고, 2단계 “임의협조단계”에서는 특이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받는 한편, 지배회사를 통해 연결절차 및 대상범위 적정여부를 확인하며, 3단계 “정밀감리단계”에서는 해당회사의 소명으로도 특이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밀감리에 착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한 자료 제출(감사조서 포함)을 요구함으로써 발동하게 된다.

<표 3-7> 연결실체감리 개요



※ 출처: 금융감독원, IFRS 시대에 부응하는 2012년 감리업무 운영방안, 정례 브리핑 자료 (2012. 5. 8), p.6 (<http://www.fss.or.kr>)

2. 연결재무제표 감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실제 우리나라 기업현실에서는 상장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배기업에 비하여, 종속기업은 상장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¹⁸²⁾

이러한 기업현실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모두 상장된 경우이기 때문에 모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리가 실시되는 경우 보다, 종속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리가 실시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에 관한 신뢰성과 투명성에 흠결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회계규정 및 기준의 불일치가 실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연결재무제표 감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앞서 언급한 감사보고서 감리기능의 보완 및 다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상장지배회사 및 상장종속회사가 연결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나, 종속회사가 비상장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리업무 주체 및 수행방법에 있어서 차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현행 외감규정상 감리업무 위탁규정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표본산정된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이외의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⁸³⁾

182) 라채원·오명전, 연결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효율적 감리운영 방안 연구, 금융감독원 (2012), p.81.

183) 라채원·오명전, 앞의 책, pp.86~90.

[참고조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7조(감리업무의 위탁)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함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회사(감독원의 감리대상기간에 한한다)

다만 감리업무 위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감리제도의 운영은 감독기관과 위탁업무를기관간에 있어서 긴밀한 업무협조를 전제가 되어야 하며, 차후에 발견되는 감리결과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 책임소재 및 감리의 재심의 가능성 등이 함께 논의되어져서 제도적인 수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품질관리감리의 기능 제고

1. 우리나라 품질관리감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감리제도 운영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적인 감독제도로서의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즉, 기업회계적 입장에서 고려하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사후적을 발생한 회계처리의 오류와 잘못을 적발한다는 취지로만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전적·예방적 회계감독 시스템과는 부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감독당국 또는 정부감독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사전적·예방적 회계감독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를 금감원이 직접 실시하고 있다.¹⁸⁴⁾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향상하고 회계오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높은 품질의 감사보고서가 원천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¹⁸⁵⁾

2012년 4월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총 126개 회계법인 중 32개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접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¹⁸⁶⁾이고, 나머지 94개 회계법인 및 251개 감사반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⁸⁷⁾

2. 품질관리감리제도 개선방안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에 대한 감독은 감사보고서 감리가 아니라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회계감사 품질을 개선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품질관리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품질관리감리 중심으로 감리제도의 중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감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

184) 품질관리감리는 적정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감사인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권고 등 조치하는 사전적 회계감독제도인 반면, 감사보고서감리는 기발행된 회사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발견된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치하는 사후적 회계감독제도이다.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제도 도입 5년의 성과 및 과제, 정례브리핑 자료 (2013.1.15), p.2)

185)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앞의 책, p.114.

186) 상장회사 총 수의 1% 이상을 감사하거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30인 이상인 회계법인 등.

187) 금융감독원, 앞의 자료, p.2.

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의 마련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¹⁸⁸⁾ 즉, 국제회계사연맹 회원규약에서도 감사인 징계규정과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결과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¹⁸⁹⁾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회계법인들이 수정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¹⁹⁰⁾

상기의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최근 추진·예정되어 있는 감독당국의 제도개선계획 또한 주목할 만하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의 수준과 상관없이 상장법인 등을 감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①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준수해야할 기준 등을 승인하도록 법적 명시규정으로 마련하여 품질관리기준의 규범성을 제고하고, ② 품질관리감리 이후 개선권고 사항

188)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앞의 글, p.56.

189)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감리제도에 있어서 품질관리감리업무는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이미 지침으로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품질관리기준(ISQC)을 2006년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용하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과 회계업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정한 「품질관리기준서」(구 「감사 등 업무의 품질관리기준」)를 근거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국제기준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 기준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 전반의 명료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제품질관리기준서(ISQC)에서 “Quality Control for Firms that Perform Audits and Review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Assurance and Related Services Engagements”을 재작성하고 2008년 9월에 최종 승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200~700번대의 개정 국제감사기준서들을 번역·도입(2011.10.28 의결)하고, 2012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 회계감사기준을 공표하였다. 기준위원회는 개정 「국제품질관리기준서1」에 따라 현행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에 반영하여 회계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 품질관리기준서1 :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개정개요 (2013. 8.20), p.3)

190)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앞의 글, p.56.

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면 및 실지점검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질관리감리 사후관리 강화를 법적·제도적 장치를 검토하며, ③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보고서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스템 미비에 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즉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정보 공개를 제도적 도입¹⁹¹⁾을 검토하는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에 관하여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¹⁹²⁾

<표 3-8>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항목(안)

구 분		세부평가항목
자금·회계·업무수입의 관리형태		자금·회계·업무수입의 관리형태
품질관리	품질관리예산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인건비 투입
	품질관리에 따른 이사의 평가 및 성과배분	품질관리에 따른 이사의 평가 및 성과배분
	독립성관리제도	독립성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의 수임전 독립성점검
독립성 사후모니터링		
업무수행 관리	감사시간 관리제도	감사시간집계제도의 운영
		담당이사 투입시간
	사전심리제도	사전심리시간

191) 선행연구에서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의 결과에 대한 공표에 있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① 회계법인이 자체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 ② 회계법인 우대정책을 위한 금융당국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③ 금감원이 점검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여 시장에서 품질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④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창우·정도진외 4인,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위원회 (2011.10), pp.23~26)

192) 금융감독원, 앞의 자료, pp.12~13.

구 분		세부평가항목
		감사실패시 심리이사 문책제도
		심리이사의 적격성제도
		심리이사의 객관성제도
		사전심리대상회사의 범위
	사후심리제도	연간 사후심리 수검 이사수
		사후심리시간
		사후심리결과의 사후관리제도

※ 출처 : 금융위원회,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2011.11.1.), 보도참고자료, p.8.

V. 양정기준 개선

1. 국제회계기준·국제감사기준 도입 이후의 양정기준 변화

연결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감리에 있어서 감리결과조치에 대한 양정기준의 타당성 논의는 상당히 의미있는 진행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정기준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양정기준은 국제회계기준 환경에 적합한 양정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성이 심각하였었다. 연결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의 합산은 근거로 하여 작성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개별 재무제표에서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전 양정기준의 경우는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조치가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복 문제의 해결이 사안의 중심이었는데, 2013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의 개정으로 일정 수준 해결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중

복가능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법행위를 평가하여 처벌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이 미치는 상황과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 재무제표상 감리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비례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⁹³⁾ 그러나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양정기준에 의한 처벌보다는 제도적으로 기업 공시환경을 자발적인 공시와 오류수정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내 다수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금액의 중요성, 위법동기 등을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되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위법행위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조치를 양정하되,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93)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양정기준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책임소재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감리이후 회계분식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관련회사 및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지배회사는 종속회사 경영활동 전반을 통제하며 종속회사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에 대한 최종책임은 지배회사가 부담해야 하고, 종속회사는 지배회사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로서 자신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별도로 공시하므로 개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배회사에 대한 조치의 수준은 왜곡표시 금액이 전체 연결자산 혹은 연결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종속회사에 대한 조치의 수준은 왜곡표시 금액이 개별자산총액 또는 개별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권수영 · 이영한 · 황문호, 앞의 글, p.63)

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배회사의 위법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법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지배회사를 조치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독소홀로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조치하거나 종속회사의 책임에 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종속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라.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을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마.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인이고 종속회사 위법행위가 연결재무제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감사인의 위법동기는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담당이사(감사인)가 상이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2. 양정기준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

양정기준에서 개선된 사항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감리

결과조치의 감경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즉,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사 감리 착수를 해당 회사에 통보한 날 이전까지 ① 위법행위 사실을 문서로 신고한 후 신고내용을 거래소 수시공시(상장법인) 등을 이용하여 즉시 공개하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경우와 ②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수정·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리결과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⁹⁴⁾ 이러한 양정기준의 개선은 자발적 수정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한 제도개선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수정·공시에 적극적 조력한 경우에만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해당 회사에 의하여 감사인의 오류 수정권고가 거부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만 자발적으로 수정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하여 감사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감경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양정기준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양정기준에서는 감사인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회계오류의 수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수정에 조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의견 등을 변경하여 수정감사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조치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¹⁹⁵⁾ 이러한 제도개선은 수정공시제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책임원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아야 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규정이 최소한 시행령 이상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위반에 관한 징계의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조차 아닌, 규정

19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3. 기본조치 감경사유, 가. 1) 항목

19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3. 기본조치 감경사유 나. 5) 항목

의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오랫동안 관행처럼 제도운영이 이루어져 온 사항인데,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부분의 제도에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위반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이 아닌 하위규정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은 다른 행정처분 관련 법제도와도 형평에 맞지 않으며, 자의적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행세칙 별표의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서는 감사업무수행하게 되는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외감법과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의 규정이 법률 또는 시행령이 아닌 시행세칙에 여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체계상 잘못 위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감사기준의 특성이 위험중심 감사방식을 진행하면서 감사절차상 참여하는 감사인의 책임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향후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외감규정에서 규정하더라도, 최소한 법률에서 비례적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분할될 수 있다는 비례책임 등과 같은 원칙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결 론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글로벌 변화는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시유형 및 공시규제형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의 변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은 자본시장에 많은 영향과 함께 공시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법제도 정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경우는 이미 도입되어 제도정착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은 국제회계기준의 제도정착 과정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공시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국제감사기준 도입과 관련되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공시제도에 대한 법제개선은 기본적으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외에 관련 법률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시행령, 규정, 지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의한 공시제도의 변화 및 대응에 관하여 법제도적인 쟁점사항으로서, 원칙중심 및 연결중심 회계기준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 지배회사·종속회사 문제, 회계처리의 전문가적 판단 고려, 사전적·공시감독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감사기준의 제정,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관련인 교체제도, 감사계약의 해지 및 감사인 선임 등을 검토하였고, 국제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의 도입에 의하여 회계감독에 관한 감리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감사보고서의 감리기능 보완,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리, 품질관리기능의 제고와 현행 양정기준의 합리성 제고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심적인 결론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는 “원칙중심 회계접근방법”의 도입이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기존 감사 및 회계업무 관련자에게 요구하였던 전문적 판단 그 이상의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회계전문가의 필요성은 감사인 선임 또는 감사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의 필요성을 발생시켰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공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수시공시 사항에 관한 개정을 수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시공시의무 적용”에 관하여 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재무정보 관련 수시공시 의무비율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는데, 수시공시 의무비율은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공시사항 적용을 현행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며, “종속회사 관련 수시공시의무 신설”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됨에 따라 상장법인에 중대한 영향(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종속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관련사항)에 대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다만 도입 초기 상장법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 공시 지연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는 2013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였다. 이러한 규정개정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공시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공시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예측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향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연결재무제표 공시 관련 사례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사항 검토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장을 신청한 상장예정기업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감사가 가능한지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¹⁹⁶⁾에서는 몇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해 보면 국제회계기준 최초 도입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새로운 규제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상장하는 것은 일정한 규제의 틀안에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규제를 받는 대신에 상장으로 인한 혜택을 향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경영성과의 도출과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또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비상장기업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업이 경영전략상 상장을 결정하였을 때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3개 사업연도 전부터 작성했어야 한다면, 이는 기업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환경조성에 역행하는 제도일 수 있다. 최소한 3개 사업연도를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196) 정석우·신현걸·임태균·권성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상장·공시제도 정비방안, 한국거래소 (2009.11), pp.211~212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상장을 하게 된다면, 상장결정을 그 이전에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전략의 수립에 매우 어려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을 위하여 제출되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 중에는 “공정가치평가”의 적용확대가 있다. 공정가치평가는 필연적으로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참여자들간의 거래에 이루어지는 가격 또는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입장에서 매우 주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공정가치평가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은 회계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감사의 절차진행이 어디까지나 수치화된 정보 및 계산에 의하여 규정된 기준을 근거로 수행되었고, 이러한 감사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주기를 검토하고 감사하였다고 한다면, 원칙주의에 근거한 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상 공시되는 주기는 정량적인 정보가 아닌 정성적인 정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실무에 있어서 주기의 정리방식을 통일적이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재무제표와 주기, 주기와 재무제표의 정보와의 사이에 판단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회색영역의 범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재무제표의 범위 밖에 있는 정보가 많은 내용을 포함되어져서 공시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작성에 대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기에 대한 공시제도의 보완이 단순한 리뷰 또는 조사에 의하여 감사를 대체하거나 또는 감사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생략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주기에 대한 공시의 감사 절차는 수치화된 정보를 증빙하는 절차보다 더욱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요구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는 외국의 규정례 등을 참고하여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인 원칙중심 회계처리로 인하여 기업공시 담당자들은 충분한 재량이 주어짐과 동시에 공시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 재무제표가 사전공시되고, 그 이후 수정 재무제표가 공시되었을 때 사전 공시된 재무제표에 의해 자본시장이 반응한다면 저품질 회계정보로 인해 자본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감사인의 감사책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시장의 혼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충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되, 감사전 회사 제시 재무제표를 자본시장에 공시는 하지 않고,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감사인의 수정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크게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삼사감리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신국제감사기준에서는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핵심 업무팀원들은 업무팀원간의 감사업무 협력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감사기준이 갖고 있는 특성인 절차중심적 감사업무와 기업경영 내부의 위험을 전략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전문성 요청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외감법상에 있는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규정은 이러한 신국제감사기준과 조화되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감사인 교체제도에 대하여 통계방법과 공학적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¹⁹⁷⁾에서는 감사관련 업무자의 강제 교체가 감사

197) 권영호, 감사인 교체와 규모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25집 (2009.3), p.152.

품질의 제고와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동선행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강제교체제도는 계속 감사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단면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무리한 제도로 분석하고 있고, 감사인 교체여부에 따른 감사품질은 감사인 교체기업이 비교체기업보다 유의하게 교체연도에 재량발생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사품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인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은 그 교체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궁극에 가서는 감사법인의 주기적 교체규정과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연대책임 규정과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인의 책임 문제가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배회사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종속회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배회사 감사인의 업무요청 등에 관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외감법 제6조에서 규정된 감사인의 권한에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업무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어느 정도 종속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실무적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비례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대책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감사기준의 도입 이전에도 감사인의 비례책임이 주목받았었는데,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감사기준의 도입 이후에는 그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현재 제도정착 단계에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도입초기에 있는 국제감사기준에 관하여 많은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있다. 현재 진행된 법제도개선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도정착기와 제도시행초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누적된 사례가 아직 부족하고, 예측가능한 문제점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서완석, 유가증권 발생시장의 공시제도, 한국학술정보, 2007.
- 손성규, 수시공시이론 : 제도 및 정책, 박영사, 2009.
- 윤계섭·허희영,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12.
- 이상복,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박영사, 2012.
- 고영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평가,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43호, 2011.7.
- 권대영, 회계제도선진화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BFL 제3호, 2004.1.
- 권수영·이영한·황문호,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10.5.
- 권수영·이영한·황문호, 국제회계기준(IFRS) 및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11.6.
- 권영호, 감사인 교체와 규모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25집, 2009.3.
-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사례와 시사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10.1.
- _____, 주요국의 회계감독제도 비교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06.
- _____, 한국의 IFRS 도입, 시행과 교훈, 금융감독원, 2012.12.
- _____,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사례와 시사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10.1.

참 고 문 헌

_____,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감리방식 개선, 정례브리핑 자료, 2005.5.10.

_____, 2013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보도자료, 2013.3.28.

_____, K-IFRS 연결재무제표 공시현황 및 감독방향, 정례브리핑 자료, 2012.7.11.

_____, IFRS 시대에 부응하는 2012년 감리업무 운영방안, 정례브리핑 자료, 2012.5.8.

_____,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제도 도입 5년의 성과 및 과제, 정례브리핑 자료, 2013.1.15.

_____, 2013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보도자료, 2013.3.28.

_____, K-IFRS 연결재무제표 공시현황 및 감독방향, 정례브리핑 자료, 2012.7.11.

금융위원회,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개정, 보도자료, 2012.11.28.

_____,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보도자료, 2013.6.19.

_____, IFRS 적용 관련 간담회 개최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 2012.6.22.

_____, 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 보도자료, 2012.12.12.

금융위원회,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2011.11.1.

김노창 · 권성수 · 심태섭, 국제회계기준의 판단적 용어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12.

- 김문현 · 정윤모 · 손영락 · 김란영, 한 · 미 · 일 공시제도의 현황 및 비교, 한국증권연구원, 2001.7.
- 김병호,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채택과 회계품질의 변화, KRX Market, 2009.12.
- 김성진, 미국의 기업공시제도 현황, “국가별 기업공시제도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10.18.
- 김예경,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국제회계연구 제26집, 2009.6.
- 김이배, 회계투명성 제고 - IFRS와 XBRL의 도입,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2009.12.
- 노희진 외 7인, 우리나라 회계 관련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8.3.
- 라채원 · 오명전, 연결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효율적 감리운영 방안 연구, 금융감독원, 2012.
- 박상범, 기업공시의 자율규제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공시 순위(Corporate-Disclosure Ranking)를 위한 공시업무이행지수 개발을 중심으로, 상장협 제52호, 2005.9.
- 박찬호 외 3인,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7.12.
- 백원선 · 유재권, 품질관리감리와 감사보고서감리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금융감독원, 2011.12.
- 송인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투명성, 상장협연구 제53호, 2006.4.

참 고 문 헌

- 송인만·노형식, IFRS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한국금융연구원, 2011.3.
- 신현걸, 공정가치평가, 한국금융연수원 WEBZINE, 2010. 가을.
- 심태섭·배수진,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12.
- 우용상·김우영·정광화, New ISA 600(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시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 2011.11.
- 윤계섭, 수시공시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경영논집 제36권 제2·3호, 2002.9.
- 이승환,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국가별 기업공시제도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10.18.
- 이정호, 미국에 있어서 현대 재무공시의 기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논집 제35권 1호, 2001.3.
- 이창우·송인만·고승의·박대준,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 방안, 금융감독원, 2008.2.
- 이창우·정도진 외 4인,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위원회, 2011.10.
- 정석우·신현걸·임태균·권성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상장·공시제도 정비방안, 한국거래소, 2009.11.
- 정영기·박재환·박종성·전규안·이영한,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9.
- 정영무·이기세·전성일,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2009.

정태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이행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2010.12.

한국거래소, K-IFRS 관련 공시제도 개선 및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보도자료, 2013.2.22.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과 주요 5개국 회계제도 비교분석, 한국공인회계사회, 2008.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 품질관리기준서1 :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개정개요, 2013.8.20.

황운경,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기업법제의 변화 : 각국의 기업회계제도의 비교적 고찰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4권 제1호, 2012.

Aparna Viswanathan, From Corporate Governance To Social Enterprise: An Analysis of the Companies (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2004, International Company And Commercial Law Review, 2005

Improving business reporting- a customer focus; meeting the information needs of investors and creditors, AICPA, 1994

Jonathan E. A. ten Oever, Case Note : Insider Trading and the Dual Role of Information : United States v. O'Hagan, 106 YALE. L. J. 1325 (January, 1997)

KPMG, Business Alert, Global Japanese Practice Vol 113, March, 2013

참 고 문 헌

Lawrence A. Cunningham, Finance Theory and Accounting Fraud: Fantastic Futures versus Conservative Histories,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78, August 3, 2005.

Lawrence A. Cunningham, A Prescription to Retire the Rhetoric of “Principles-Based Systems” in Corporate Law, Securities Regulation and Accounting, BOSTON COLLEGE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127 (March 13, 2007)

Lawrence E. Mitchell, The Importance of Being Trusted, 81 B. U. L. REV. 591, 2001.

Lisa M. Fairfax, Spare the Rod, Spoil the Director? Revitalizing Directors’ Fiduciary Duty through Legal Liability, 42 HOUS. L. REV. 393, Summer, 2005.

Lyman Johnson, After Enron - Remembering Loyalty Discourse in Corporate Law, 28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2003

Margaret M. Blair & Lynn A. Stout, Trust, Trustworthiness, and the Behavioral Foundations of Corporate Law, 149 U. PA L. REV. 1735, 2000-2001.

Nicole M. Kim, Malone v. Brincat ; The Fiduciary Disclosure Duty of Corporate Directors under Delaware Law, 74 Wash. L. Rev. 1151, October, 1999.

NOTE, The Propriety of Judicial Deference to Corporate Boards of Director, 96 HARV. L. REV. 1894, June, 1983.

Renee M. Jones, Law, Norms, and the Breakdown of the Board: Promoting Accountability in Corporate Governance, 92 IOWA L. REV. 105, November, 2006.

Sarah H. Duggin & Stephen M. Goldman, Restoring Trust in Corporate Directors: The Disney Standard and the New Good Faith, 56 AM. U. L. Rev. 211, December, 2006.

Mark A. Sargent, Some thoughts on the Revised Uniform Securities Act, 14 Securities Regulation Law Journal 62, 1986.

Sarbanes - Oxley Act of 2002

Securities Act of 1933.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rust Indenture Act of 1939.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今川嘉文, 企業情報開示と外部監査制度の強化, 神戸学院法学 第34巻 第2号, 2004.8.

上野雄史, 企業リスクの情報開示と有用性に関する考察, 生命保険論集 第174号, 2011.

五十嵐則夫・町田祥弘, IFRSの下での財務諸表監査の課題, 「企業情報開示システムの最適設計」 第4編 IFRS導入と監査のあり方,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1-J-016, 2011.3.

참 고 문 헌

浦崎直浩, 企業情報開示システムの最適設計に資する監査制度の構築へ
向けて－見積・予測財務情報の保証業務のあり方について, 「企業
情報開示システムの最適設計」 第4編 IFRS導入と監査のあり方,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1-J-016, 2011.3.

川口恭弘, 開示制度の意義, 「企業情報の開示制度について」, 同志社大学
監査制度研究会と関西支部監査実務研究会との共同研究会, 2009.

鈴木直行, 会計情報の提供プロセスにおける経営者の裁量の意義と問題点,
金融研究, 2003.3.